

관세연구 15 - 03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2015. 12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강 성 훈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미 영 특수전문직 3급

김 다 랑 특수전문직 4급

목 차

| | |
|--|----|
| I. 서론 | 9 |
| II. 우리나라 AEO 제도와 사후관리 | 12 |
| 1. 우리나라의 AEO 제도 | 12 |
| 가. 제도 개요 및 특징 | 12 |
| 나. 운영현황 | 14 |
| 다. AEO 공인기준과 절차 및 혜택 | 15 |
| 2. AEO 공인 후 사후관리 | 21 |
| 가. 자율관리 | 24 |
| 나. 기업상담전문관 | 26 |
| 다. 종합심사 | 30 |
| III. 주요국의 AEO 제도 운영 현황과 사후관리 | 34 |
| 1.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SAFE Framework) | 35 |
| 가. WCO Safe Framework의 Pillar 2 세관-민간협력의 기준 | 38 |
| 나. WCO SAFE Framework의 AEO 공인 후 관리 | 42 |
| 2. 미국 | 46 |
| 가.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운영 현황 | 48 |
| 나. C-TPAT 사후관리 현황 | 54 |
| 3. 중국 | 72 |
| 가. 중국의 AEO 운영 현황 | 73 |
| 나. 중국 AEO 사후관리 현황 | 81 |
| 4. 일본 | 87 |

| | |
|----------------------------|-----|
| 가. 일본의 AEO 공인제도..... | 87 |
| 나. 일본의 AEO 운영 현황 및 동향..... | 92 |
| 다. 일본의 AEO 사후관리 현황..... | 95 |
|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02 |
| 1. 국제비교..... | 102 |
| 가. 기업의 자율관리..... | 102 |
| 나. 공인 재(갱신)심사의 유형..... | 105 |
| 다.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 109 |
| 2. 시사점..... | 111 |
| 가. 정기자체평가의 개선..... | 111 |
| 나. 기업상담전문관의 배양..... | 115 |
| V. 결 론..... | 117 |
| 참고문헌..... | 119 |
| 부 록..... | 123 |

표목차

| | |
|--|----|
| 〈표 II -1〉 우리나라의 부문별 AEO 공인업체 현황 | 14 |
| 〈표 II -2〉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과 주요 내용 | 16 |
| 〈표 II -3〉 우리나라 AEO의 내부통제시스템 공인요건 | 18 |
| 〈표 II -4〉 우리나라의 AEO 공인 혜택 | 20 |
| 〈표 II -5〉 우리나라 AEO 사후관리 | 22 |
| 〈표 II -6〉 우리나라 AEO 고시 사후관리 관련 주요 개정 | 24 |
| 〈표 II -7〉 우리나라 기업상담전문관의 역할 | 29 |
| 〈표 II -8〉 우리나라 종합심사 현황 | 31 |
| 〈표 III-1〉 주요국 선정기준 | 34 |
| 〈표 III-2〉 WCO SAFE Framework의 구조 | 37 |
| 〈표 III-3〉 WCO SAFE Framework 세관과 민간 간 협력 표준 내용 | 38 |
| 〈표 III-4〉 WCO SAFE Framework의 AEO 공인기준 지침 | 40 |
| 〈표 III-5〉 WCO SAFE Framework상 AEO의 사후관리 | 46 |
| 〈표 III-6〉 미국 C-TPAT의 외국 제조업자에 대한 보안기준 | 49 |
| 〈표 III-7〉 미국 C-TPAT 안전관리 주체 및 세부기준 | 58 |
| 〈표 III-8〉 미국 위험평가 프로세스 결과 보고서 포함 사항 | 61 |
| 〈표 III-9〉 미국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요소 | 65 |
| 〈표 III-10〉 미국 기업상담전문관의 관리 대상 | 68 |
| 〈표 III-11〉 중국 기업분류관리 AA류 인증 기준(수출입화물 송수하인) | 74 |
| 〈표 III-12〉 중국 기업분류관리 AA류 인증의 혜택 | 76 |
| 〈표 III-13〉 중국의 새로운 기업평가기준 대상 구분 | 77 |
| 〈표 III-14〉 중국의 새로운 기업평가기준(고급인증기업) | 78 |

| | |
|--|-----|
| 〈표 III-15〉 중국 AEO 인증기업의 혜택..... | 80 |
| 〈표 III-16〉 일본의 AEO 공인기준과 주요 내용..... | 87 |
| 〈표 III-17〉 일본 법규준수규칙(CP) 요건..... | 89 |
| 〈표 III-18〉 일본 내부 감사 체크리스트(수입자수출자용) 예시..... | 98 |
| 〈표 IV-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내부통제시스템 공인요건 비교..... | 105 |
| 〈표 IV-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AEO심사와 통관적법성 심사..... | 107 |
| 〈표 IV-3〉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AEO 사후심사(갱신심사)..... | 108 |
| 〈표 IV-4〉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운영 현황..... | 110 |

그림목차

| | |
|---|-----|
| [그림 II -1] 우리나라의 AEO 운영 조직도..... | 13 |
| [그림 II -2] 우리나라 AEO 공인 절차..... | 19 |
| [그림 II -3] 우리나라 AEO 종합심사 절차..... | 33 |
| [그림 III -1] WCO SAFE Framework의 제정 연혁 및 구조..... | 36 |
| [그림 III -2] 미국 5단계 위험평가 프로세스 체계도..... | 59 |
| [그림 III -3] 미국 C-TPAT 위해요소 평가 모듈 지침..... | 60 |
| [그림 III -4] 미국 CEE기관 분포 지역..... | 71 |
| [그림 III -5] 일본 AEO 인증 절차..... | 91 |
| [그림 III -6] 일본 AEO 제도의 발전..... | 93 |
| [그림 III -7] 일본 AEO 사후관리 절차..... | 101 |
| [그림 IV -1] 우리나라 AEO 공인 부문별 중소기업 공인율..... | 113 |
| [그림 IV -2] 우리나라 연도별 AEO 공인율(수출부문)..... | 114 |

I. 서론

- 우리나라는 국경보호와 화물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에 관한 규범(WCO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to Global Trade, 이하 ‘WCO SAFE Framework’)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제도를 도입하였음
 - AEO 제도란 세관이 안전관리와 법령준수의 체제를 정비한 수출입공급망 당사자를 AEO 업체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수출입공급망 당사자에 대해서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세관과 민간 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의미함

- 우리나라 AEO 제도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국제무역 당사자들의 화물안전을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기업관리 제도에 안전관리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함
 - 공인기업들에 신속통관에 함께 기업심사 면제라는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AEO 제도와 운영 방법이나 정책 방향에 다소 차이가 있음

- AEO 업체로 공인된 후의 사후관리는 기업의 자율관리 지원과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종합심사의 안정화, 통합법규준수도의 평가항목 추가 등을 통하여 기업관리 부문이 보완되었음
 - 법규준수도 공인기준은 신고정확도뿐만 아니라 무역법령 위반 여부, 종합심사협력도 등을 평가함
 - 기업심사를 면제받은 AEO 공인기업들에 대해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 시 공인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통관적법성도 평가함

- 현재 우리나라의 AEO 제도는 AEO 기반의 관세행정이 마련된 가운데 공인기업들의 사후관리를 내실화해 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¹⁾
 - 사후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음

- 2009년 AEO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뿐 AEO 시행 7년차인 현 시점에서 AEO 공인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임

-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공인기준의 세계적 통일 규칙인 WCO SAFE Framework 지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주요국들의 AEO 공인 및 사후관리제도를 조사하였음
 - 주요국의 해외사례 조사 시,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① 공인기준, 공인 혜택 등 AEO 제도의 운영현황, ② 공인 후 기업 스스로 공인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자율관리, ③ 세관에서 AEO 공인기준 여부를 확인하는 공인기준 심사와 기업의 자율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등임

-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위한 주요국으로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체결한 국가 중 높은 무역순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선정하였음²⁾
 - 우리나라는 2009년에 도입하여 2016년 1월 현재 총 563개(701개 부문)의 기업이 공인받은 상태임³⁾
 - 각 주요국에서는 WCO SAFE Framework의 기본 골격을 인용하되, 자국의 무역환

1) 김재일,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 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p.56.

2) 2015년 개정된 중국의 AEO법령 내용을 조사함에 따라, 기존의 기업등급분류관리하의 AA등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역세관에서 비공개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내·외부 자료를 찾을 수 없었으나 2015년도 AEO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함

3) 최창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기업 선정...통관 때 관세조사 면제 등 편의」, 『매일신문사』, 2016. 1. 12,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963&yy=2016

경,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소 변형된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후관리 방법 또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

-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Ⅱ장부터 제Ⅴ장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AEO 공인제도 현황과 기업과 세관의 사후관리를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함
 - 제Ⅲ장에서 WCO Safe Framework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본 후,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사후관리 제도를 살펴봄
 - － AEO 공인제도 및 기업의 자율관리 방법, 공인 후 심사,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등
 - 제Ⅳ장에서는 앞서 비교분석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AEO 사후관리 제도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림

II. 우리나라 AEO 제도와 사후관리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AEO 제도의 공인기준, 공인절차 등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① 공인기업 스스로 관리하는 정기자체평가 등 자율관리, ②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그리고 ③ 세관의 종합심사로 나누어 AEO 사후관리 제도를 살펴봄

1. 우리나라의 AEO 제도

가. 제도 개요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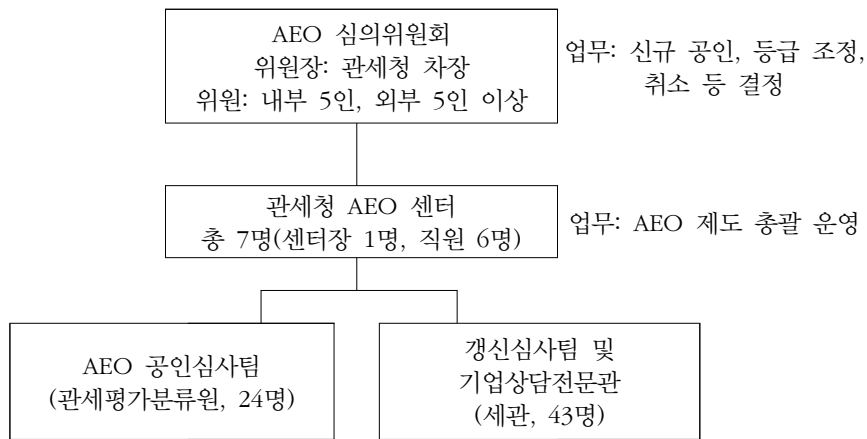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2005년 WCO SAFE Framework를 기축으로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체제에 동참하고, 무역거래가 확대될수록 증가하는 무역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위험관리 제도인 AEO 제도를 도입하였음
- AEO 제도는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관세당국이 공인한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사회 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AEO 제도는 2008년 1월 관세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9년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AEO 고시')가 제정되어 공인기준, 심사절차, 그리고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 「관세법」 제255조의 2,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 2와 3 이외에도 AEO 고시, 예비 또는 서류심사의 대외위탁 근거가 되는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를 시행 중임

- 세칙으로는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 지침」 등이 있음

- AEO 제도 운영조직은 관세청에 AEO 센터를 두고 공인심사팀과 공인 갱신, 통관적법성 관련 정보제공 등 자율관리를 지원하는 갱신심사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그림 II -1] 우리나라의 AEO 운영 조직도



출처: 관세청, 『AEO 제도 및 국제동향』, 2014.

- 우리나라 AEO 제도의 특징적인 점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AEO 제도를 물류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통관, 심사, 조사 등 관세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면이나 정책방향에서 다른 국가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⁴⁾

- 김재일(2014)은 한국 관세행정을 단순한 위험관리의 개념이 아닌 기업관리 차원에서 AEO 제도를 축으로 모든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으로 설명함

4) 김재일,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 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p.56.

나. 운영현황

- 2010년부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소기업 수출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외국과의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함에 따라 AEO 공인기준이 국제표준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공인준비와 심사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 절차의 간소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공인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 요구기준을 축소하거나, 법규준수도 기준 점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국제규범 범위 내에서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인확대에 기여함⁵⁾
 - 2014년 총 182개의 중소기업(수출입 62개, 관세사 9개, 물류 111개) 가운데 65개 기업이 수출 분야임
 -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13년부터 추진된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업체, 주선업자, 운송업자, 보세구역 부문의 공인업체 수가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표 II-1〉 우리나라의 부문별 AEO 공인업체 현황

(단위: 개수)

| 연도 | 부문별 신규 공인 현황 | | | | | | | | | 합계 |
|-------|--------------|------|-----|------|------|------|------|-----|------|-----|
| | 수출업체 | 수입업체 | 관세사 | 주선업자 | 운송업자 | 보세구역 | 선박회사 | 항공사 | 하역업체 | |
| 2009년 | 5 | 5 | 1 | 4 | 2 | 3 | 1 | | | 21 |
| 2010년 | 27 | 28 | 11 | 4 | 1 | 1 | 2 | | | 74 |
| 2011년 | 31 | 35 | 15 | 15 | 1 | 5 | 2 | | | 104 |
| 2012년 | 31 | 34 | 35 | 49 | 7 | 7 | 2 | 2 | | 167 |
| 2013년 | 33 | 20 | 24 | 65 | 10 | 10 | 1 | | 4 | 167 |
| 2014년 | 27 | 8 | 9 | 30 | 7 | 8 | 1 | 1 | | 91 |
| 2015년 | 57 | 8 | 7 | 20 | 1 | 10 | | | 1 | 104 |

출처: 관세청 내부자료

5) 관세청, 『관세연감(2014)』, 2015, p.147.

-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 지원정책은 공인심사 컨설팅 비용과 교육비용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와 더불어 AEO 공인기준을 완화하는 등 AEO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컨설팅 방식의 심사 등 특별절차를 마련하였음⁶⁾

- 한편, 우리나라는 전략적인 AEO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추진해온 결과, 2015년 12월 기준 세계 최다(13개국⁷⁾) 체결국임⁸⁾
 - 상호인정약정(MRA)은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양국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함
 - AEO 제도 시행 국가들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물품이 해외 수입통관 시 검사생략, 검사선별 시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 AEO 공인기준과 절차 및 혜택

1) 공인기준

- 우리나라는 무역안전뿐만 아니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위험관리를 강조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AEO 공인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⁹⁾ AEO 공인기준은 4개 항목 즉, ① 법규준수, ② 내부통제시스템, ③ 재무건전성, ④ 안전관리로 구분됨
 - 대부분의 주요국은 무역안전 중심으로 AEO 공인기준이 규정됨
 - 4개의 공인 기준은 AEO 제도의 적용대상인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등 당사자별로 공인 부문의 업무특성에 따라 세분화함

6) 관세청, 『알기쉬운 AEO 제도 가이드』, 2013, pp.17~19.

7) 13개(캐나다('10), 싱가포르('10), 미국('10), 일본('11), 뉴질랜드('11), 중국('13), 홍콩('14), 멕시코('14), 터키('14), 이스라엘('15), 도미니카공화국('15), 인도('15), 대만('15))의 국가들과 체결한 상황임

8) 한국AEO진흥협회 홈페이지, <http://www.aeo.or.kr/intrcn/aeoNationMraView.do>, 검색일자: 2016. 3. 2.

9) 김재일,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p.65.

- 4개의 공인기준은 각 당사자별로 60~80여개의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업체의 자율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에는 각 공인기준을 세부항목별로 문서화 요건 또는 실행 요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어의 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이 설명되어 있음

〈표 II-2〉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과 주요 내용

| 분야 | 주요 내용 |
|---------|---|
| 법규준수 |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
| 내부통제시스템 |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관련 서류의 흐름,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체제를 평가 |
| 재무건전성 |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기업규모 및 재정상황 (예: 조세 체납여부, 신용등급 등)인지를 평가 |
| 안전관리 | 거래업체, 컨테이너,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 장비, 정보기술, 교육, 훈련 등의 안전성 충족여부를 평가 |

출처: 관세청, 『알기쉬운 AEO 제도 가이드』, 2013, p.16.

- (법규준수) 법규준수 기준은 관세법상 결격사유(법 제 175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전자문서위조(법 268조의 2)여부와 무역 관련 법령위반 등 법규준수도 점수를 평가함
 - AEO 공인기준으로 운영하는 통합법규준수도는 신고정확도, 세액 정정, 범칙·행정 제재 등 중요사항 위반 여부, 관세행정협력도와 종합심사협력도를 평가기준으로 함
- 통합법규준수도란 관세법상 부여된 법령준수사항 및 기타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와 관련하여 업체의 법규준수 정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최근 2년간 실적을 매분기 측정하여 세관에서 제공함
 - 구체적으로는 신고정확도, 중요사항 위반 여부, 그리고 2015년 12월 신설된 관세행정협력도와 종합심사협력도로 구성됨
 - 수출입업체의 경우 신고정확도는 정정, 취하, 각하, 보완요구, 화물검사적발 등 신고오류사항을 포함하며, 물류업체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별로 신고정정률, 실시간반출입 미이행률 등 구성항목을 달리함

- 수출입업체, 관세사, 그리고 물류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의 구성체계는 서로 상이함

- 따라서 공인업체는 수출입신고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기별 주요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을 발굴·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즉시 이행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최신 관세행정 변동사항을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함

- (내부통제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은 공인업체가 관세관련 위험을 스스로 식별·해결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구조적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위험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

-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은 크게 ① 수출입관리조직의 경영방침 수립, ② 위험관리, ③ 문서화, ④ 정보공유, ⑤ 주기적 평가로 구성됨
 - (경영방침 수립) 수출입관리조직의 경영방침 수립, 세부 이행목표 수립, 조직과 인력확보 및 관세행정 발전 프로그램의 적극 참여, 관세행정 전문가와 정기적 협의 및 통관관련 교육 실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 수립, 관리대책의 주기적 평가 및 개선절차 마련과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정확도를 제고할 것을 요구함
 - (문서화) 절차를 문서화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는 정보의 이력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물품대금과 관련된 자료를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하여야 함
 - (정보공유)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함
 - (주기적 평가) 내부통제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AEO 가이드라인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의 세부항목별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단, 수출업자는 2011년 AEO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을

간소화하고 2013년에는 경영방침, 정보공유 및 주기적 평가부문에 대한 공인기준을 폐지하였음

〈표 II-3〉 우리나라 AEO의 내부통제시스템 공인요건

| 구분 | 내용 | 비고 |
|--------|--|--------------|
| 경영방침 | 1.1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수립 1.2 경영방침의 세부 이행목표 수립 1.3 조직과 인력확보 및 관세행정 발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1.4 관세행정 전문가와 정기적 협의 및 통관관련 교육 실시 1.5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활성화 | 수출자는 해당사항 없음 |
| 위험관리 | 2.1 위험요소 식별절차 마련 2.2 식별된 위험요소의 평가체계 마련 2.3 위험평가에 따른 관리대책 수립절차 마련 2.4 관리대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 마련 2.5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정확도 제고 | - |
| 문서화 | 3.1 절차를 문서화하고 최신자료 유지 3.2 이력정보 관리체계 마련 3.3 물품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자료의 관리절차 마련과 보관 3.4 물품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자료를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 | - |
| 정보 공유 | 4.1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정보 공유 4.2 거래업체와 정기적 협의 | 수출자는 해당사항 없음 |
| 주기적 평가 | 5.1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주기적 평가절차 마련 5.2 내부통제활동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절차 마련 | |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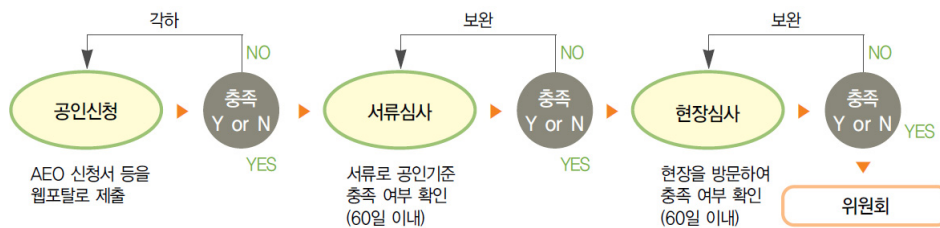
-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 공인기준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AEO 공인을 받기 위한 기업은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함
- (안전관리) 안전관리 공인기준은 기업의 안전성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업체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화물의 보관시설이나 운송수단에 대한 물리적 무결성 유지 여부, 정보보안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안전관리 공인기준은 세부적으로 총 8개 분야 즉, 거래업체관리, 운송수단관리, 출

입통제관리, 인사관리, 취급절차관리, 시설과 장비관리, 정보기술관리, 교육 및 훈련으로 구분되어 있음

2) 공인절차 및 혜택

- 우리나라의 AEO 공인은 수입업체, 수출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8개 분야의 업체들¹⁰⁾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업체들은 법규준수도와 모범사례 보유여부에 따라 A, AA, AAA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됨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는 A등급, 90점 이상인 업체는 AA등급, AA등급 종합인증우수업체 중 제18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면 AAA등급이 주어짐
- AEO 공인신청이 접수되면 위탁기관인 한국AEO진흥협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공인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AEO 심의위원회에서 AEO 공인 여부를 결정함

[그림 II -2] 우리나라 AEO 공인 절차



출처: 관세청, 『알기쉬운 AEO 제도 가이드』, 2013, p.16.

- AEO 공인 기업은 공인유효기간 5년 동안 처벌 경감, 신속통관, 기획심사, 법인심사 등 각종 심사와 납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0)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을 말함

- 물품검사비용이 축소되고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물류흐름이 원활해지며, 각종 관세 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신속통관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표 II-4〉 우리나라의 AEO 공인 혜택

| 구분 | 항목 | 내용 |
|-----------|------------------|---|
| 공동 | 처벌 경감 | 과태료 및 통고처분금액 경감 |
| | 행정제재 경감 | 기업상담전문과 활동으로 인한 정정 비중만큼 행정제재 일수 경감 |
| | 대표자 우대 | 공항 전용검사대·전용통로 입출국심사, CIP 라운지 이용 |
| 수출입 부분 | 수입신고·물품 검사 혜택 | 수입신고시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수입시 전자통관심사, 검사비용 축소, 우선검사, 관리대상 해제 |
| | 심사·납세 혜택 | 기획심사·법인심사·외국환검사·사전세액심사·건별보정심사· 건별환급심사 제외, 월별납부 허용, 신용담보 제공 |
| | 보세공장 혜택 | 자율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 보세운송 특례, 사용신고 및 사용신고 수리의 전산처리 등 |
| | 통관지원 | 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 신고 등 |
| 물류 부분 | 특허 혜택 | 특허 갱신기간 연장, 정기점검 완화, 보세운송 일괄신고 등 |

출처: 관세청, 『알기쉬운 AEO 제도 가이드』, 2013, p.4 인용하여 저자 작성

- 한편 201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해 관세조사 등으로 인한 세액 경정 시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였는데, AEO 공인기업에 대해서는 성실업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수정신고를 권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음¹¹⁾

11) 「부가가치세법」 수입세금계산서(법35조, 영72조), https://www.nts.go.kr/call/vat/2013_03/htm/13f140.htm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법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 한다(법35①, 영72①).

세관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7.26.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개정, 법35②)

①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성실신고 기업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추정보다 자율적 수정신고 권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성실납세자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또한 미국, EU 등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국가들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 수입통관 시 검사생략, 검사 선별시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AEO 공인 후 사후관리

□ AEO 공인 후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는 그 주체에 따라 공인기업이 스스로 공인요건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자율관리와 공인기관에서 심사 또는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세관관리로 구분할 수 있음

□ AEO 공인업체는 ① AEO 고시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② 공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③ 스스로 매년 자체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실시하는 종합심사를 받아야 함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 그 밖에 ㉠ 또는 ㉡ 과 유사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2013.07.01. 이후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영72②~④) 이하 생략

〈표 II -5〉 우리나라 AEO 사후관리

| 구분 | 자율관리 | 세관관리 |
|----|---|---|
| 주체 | AEO 공인기업 | 세관 공인심사 담당부서 |
| 내용 | 1. 관리책임자의 운영 및 교육 이수 2. 변동사항 보고 3. 수출입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 제출 4. 갱신하는 경우 종합심사 수검 | 1. 기업상담전문관 지정 및 운영 2. 종합심사 실시(갱신신청이 있는 경우) |

출처: 김재일,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p.68 인용하여 저자 작성

- 상기의 AEO 제도 사후관리 절차와 관련하여 AEO 고시의 주요 개정이력을 살펴보면, 2015년 이전에는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공신력 및 효율성을 개선하는 취지였으나 최근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와 제도 혜택의 확대를 목적으로 변모하고 있음
 - AEO 고시는 2009년, 2011년, 2015년에 각각 주요 개정이 이루어짐
- 2009년에는 공인 취소의 경우 재신청 금지기간 명시, 기업상담관에게 보완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종합심사와 관련해서는 종합심사의 범위를 AEO 고시 [별표1]의 공인기준으로 하되 통관적법성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유효기간을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변경하였음
 - 공인기준에 한정된 심사, 공인기준에 통관적법성 분야를 추가한 심사를 구분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 완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법인심사 주기와의 형평을 기하고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차등 대우를 요청하는 업계 의견 반영하여 A등급: 4년, AA등급: 4년, AAA등급: 5년으로 변경
- 2011년에는 공인기업의 갱신 시 갱신심사, 종합심사로 이원 관리되어 용어의 혼동 및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종합심사로 통일하고, 종합심사 대상자를 관세청장의 선정제에서 업체의 신청제로 변경하였음

- 또한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동신고 점검, 정기자체평가,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시 보완요구, 법규준수 개선계획 등 개선절차를 정비하고 AEO 공인기업에 소속된 심사자는 자체평가서 심사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 2015년에는 두 차례의 AEO 고시의 개정이 있었는데, AEO 공인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AEO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규 및 갱신 AEO 업체의 공인유효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였음
 - 관세법상 공인유효기간 관련 규정(법제255조의2 제8항)을 신설함에 따라 신규 AEO 공인업체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고시 제13조 제1항, 제4항)
 - 종전에는 2009년 AEO고시 개정을 통해 법인심사 주기와의 형평을 기하고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차등 대우를 요청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등급별로 A등급과 AA등급에 대해서는 4년으로, AAA등급에 대해서는 5년으로 유효기간을 상이하게 운영하였으나, 등급에 관계없이 5년으로 통일하였음
 - 미국(4년)과 유럽(유효기간 없음)의 사례를 반영하여 종합심사를 받은 기업에 한해 유효기간을 연장시켰음

- 기존 공인업체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인등급 조정신청과 특례적용 정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편이 있었음
 - 공인을 갱신한 AEO 공인업체의 경우 5년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등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등급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등급 조정 신청을 통해 상향이 가능하도록 함(고시 제5조 4항 내지 6항)
 - 기존에는 최초 공인심사 결과에 따른 공인유보 제도만 운영하였기 때문에 종합심사 결과가 공인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해야 했으나, 고시 개정 이후에는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소 전에 특례 적용의 정지 규정을 적용하여 공인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고시 제20조 7항 및 고시 제25조 1항의7)

- 또한 통합법규준수도 평가항목 중 관세행정협력도에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M') 협력도와 종합심사협력도를 추가로 신설하였음

〈표 II-6〉 우리나라 AEO 고시 사후관리 관련 주요 개정

| 개정연도(취지) | 내용 |
|-------------------------|--|
| 2009년 (사후관리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 취소의 경우 재신청 금지기간 명시 • 기업상담관에게 공인기업에 대한 '보완·개선계획요구권한' 부여 •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유효기간 차등적으로 변경 •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 종합심사 실시 시기 명문화, 종합심사 신청근거 신설 • 종합심사 완화 근거 마련 • 내부통제시스템 구성체계 개편 및 내용 명확화 |
| 2011년 (공신력 및 효율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 갱신 시 종합심사로 통합 • 종합심사 대상자를 관세청장의 선정에서 업체의 신청제로 변경 • 변동신고 점검, 정기자체평가,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 시 보완 절차 신설 • AEO 공인기업에 소속된 자는 자체평가심사자에서 배제 |
| 2015년 (사후관리 부담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을 등급에 관계없이 5년으로 통일 • 공인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 공인신청 제한기간 폐지 • 공인을 갱신한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등급조정신청 신설 •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인유보 및 특례적용의 정지' 규정 신설 |

출처: AEO 고시 개정요약서를 인용하여 저자 작성

가. 자율관리

1) 자율관리 운영조직 운영

- 공인업체는 총괄책임자 1명,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사업장 단위로 충분한 인원의 수출입관리책임자로 구성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관리책임자는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 및 정기자체평가서 작성, 관련 직원 교육, 유관기관과 정보 교류와 기타 사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지원을 담당하고, 법정 이수시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함

- 수출입관리조직은 공인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관리절차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위험분석을 통해 위험요소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개선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AEO 자율관리 운영조직은 ① 범규준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하는 위험평가, ②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안전관리항목 관리감독을 위한 내부통제평가, ③ 거래업체평가를 통한 거래업체 관리 및 교육 등의 위험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위험평가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평가 및 관리대상의 선정, 개선대책 수립, 개선대책 실행 및 적정성 분석을 통해 최종 개선현황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내부통제평가는 업무 매뉴얼 및 규정의 분석, 평가항목의 선정, 평가 및 관리대상 선정, 개선대책의 수립, 실행을 통해 최종 개선현황을 평가하는 순서로 이행됨
 - 거래업체 관리는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거래업체의 평가, 안전관리, 평가등급 산정을 통해 고위험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절차를 포함함

2) 변동사항 보고

- AEO 고시 제17조에 따라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인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법적 지위, 관리책임자 등 공인신청 내용과 상이한 항목들을 보고해야 함
 - 예를 들어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고해야 함

3) 정기 자체평가서 제출

- AEO 공인업체는 공인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합법규 준수도를 80점 이상으로 유지하고 위험, 내부통제, 거래업체에 대한 내부평가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사후관리 이행의무가 주어지는데, 이를 문서로 보고하기 위해 수출입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를 매

년 제출하여야 함

- AEO 공인업체는 공인 후 매년 1회씩 공인받은 달에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하고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기 자체평가서를 공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정기자체평가서에 대해서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비영리법인, AEO 공인을 받은 업체에 소속된 관세사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함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제1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해당 업체 소속 관리책임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자체평가 전 AEO 공인기준을 충분히 파악하고 해당 기업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후 '정기자체평가서'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AEO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는 '자체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정기자체평가서를 등록하는 때에 가이드라인 기준별 변동사항, 가이드라인 기준별 관리현황, 'AEO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체평가 점수 등을 기록한 '자체점검표'와 근거자료(가이드라인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 기업상담전문관

1) 개요 및 운영현황

-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M)이란 AEO 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공인기업 관할세관 소속 공무원으로, 우리나라는 기업이 무역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에

대한 세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하였음

○ 비교적 법규준수도가 높은 AEO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함¹²⁾

□ 기업상담전문관은 심사, 감정, 조사, 전문관 등이거나 그에 상당하는 전문경력을 가진 자로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¹³⁾

○ 수출입 기업상담전문관의 경우 일반심사, 환급심사, 종합심사, 심사정보분석, 수출입통관, 일반조사, 외환조사, 권리구제 등의 경력을, 물류 기업상담전문관의 경우 수출입통관, 여행자통관, 보세화물관리, 일반조사, 외환조사, 권리구제 등의 경력을 관련 전문경력으로 인정함

□ 동 제도 도입 당시 9개 AEO 공인기업에 7명의 세관 우수 전문가인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¹⁴⁾ 공인기업별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업체 규모,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인기업 관할세관 소속의 기업상담전문관과 기업상담전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심사직원으로 구성된 기업상담전문팀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수출입업체를 전담하는 기업상담전문관과 수출입업체 외의 공인기업(물류업체, 관세사)을 전담하는 기업상담전문관으로 구분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 기업상담전문관 인원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세관 등 4개의 본부세관 종합심사과 소속으로 2014년 기준으로 5명에 불과하며, 1인당 100개 이상의 업체를 담당하고 있음¹⁵⁾

12) 성남길 외 4인, 『기업상담전문관제도의 해외 사례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 p.6.

13)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3

14) 박승기, 「관세청,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도입」, 『서울신문』, 2009. 8. 2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20023010>, 검색일자 2016. 3. 2.

15) 김재일,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 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p.97.

2) 기업상담전문관의 역할

-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AEO 공인기업의 자율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관세당국에서는 기업의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자율 통제를 통한 법규준수도 제공, 가산세 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도모할 수 있음¹⁶⁾
 - 세관에서는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세액 오류 예상 정보를 AEO 공인기업에 제공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AEO 공인기업은 관세행정관련 자문, 법령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통관상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음

- 구체적인 임무로는 공인기업의 공인기준 이행의 적정성 및 법규준수 취약분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관세 행정 관련 자문·상담을 수행함¹⁷⁾
 - 개선계획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AEO 공인업체는 기업상담전문관의 사후관리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해야 함

- 또한 업체가 제출한 변동사항 보고와 정기 자체평가서를 점검하고, AEO 공인 특례적용의 정지, 중단 및 공인취소 사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¹⁸⁾
 - 정기 자체평가 결과, 업체 변동 사항, 기업상담전문관의 정보제공에 대한 자율점검 등 사후관리의 충실성, 세관협력도에 해당하는 심사정보를 심사팀에 제공함

- 기업상담전문관이 통관적법성 분야 관련 위험동향정보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

16) 이나연, 「한·중 세관 합동 기업 설명회 베이징서 개최」, 『재외동포뉴스』, 2015. 6. 25,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250>, 검색일자 2016. 2. 10.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A%B4%80%EC%84%B8%EB%B2%95#liBgcolor0>, 검색일자: 2016. 2. 19.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A%B4%80%EC%84%B8%EB%B2%95#liBgcolor0>, 검색일자: 2016. 2. 19.

기업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조치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관세조사 실시 또는 종합심사 시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음¹⁹⁾

-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공인기업에 대한 심사 관련 정보를 심사팀에 제공하기도 하고 공인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관련 세관공무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기 때문에 공인기관과 소통과 정보제공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표 II-7〉 우리나라 기업상담전문관의 역할

| 구분 | 주요 내용 |
|-------------------|---|
| 자문, 상담 및 정보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기업에 대한 관세 행정 관련 자문·상담 • 공인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관련 세관공무원과 협의 등 • 법령 제정(개정) 사항, 관세정책 변경, 우수사례 등 담당 공인기업의 공인기준 이행과 법규준수 향상·유지에 유용한 정보 제공 • 통관적법성 분야 관련 위험동향정보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내 |
| 공인기준 및 법규준수 점검·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기준 이행의 적정성 및 법규준수 취약분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 • 점검결과를 업체에 통지하고 법규준수(공인기준)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을 권고 • 개선계획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의 일정 및 내용의 보완을 권고 |
| 기업프로파일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공인기업에 대한 심사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 프로파일을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구조, 사업장, 연락처, 재무현황 2. 취급품목, 수출입내역, 거래·결제형태, 주요거래 당사자 등 3. 분야별 법규 위반내역, 오류사항 및 세관조치 4.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 관련 세부현황 5. 취약분야 및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진단, 평가 6. 법규준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현황 7. 그 밖에 공인기업의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
| 변동사항 등 모니터링 및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사항 보고 및 정기 자체평가서의 점검 |
| 보정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되 주기적 정보분석에 의해 자체적으로 심사대상 선별 • 오류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업체에 안내 |

출처: AEO 고시 인용하여 저자 작성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A%B4%80%EC%84%B8%EB%B2%95#liBgcolor0>, 검색일자: 2016. 2. 19.

다. 종합심사

1) 제도 개요 및 현황

- 종합심사제도는 성실한 납세신고를 포함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인정된 AEO 공인기업에는 기업심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인 갱신 시 통관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나라의 사후세액심사는 크게 AEO 공인기업에 대한 종합심사, 대기업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성격의 법인심사, 고위험 물품과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한 기획심사로 나눌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13년 AEO 공인 갱신방법을 종합심사로 일원화하면서, 사후세액심사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음
 - 갱신심사 절차가 갱신심사와 종합심사로 이원관리되어 용어의 혼동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AEO 고시 제19조를 개정하여 종합심사로 통합함
 - 수출입업체의 종합심사는 본부세관 종합심사팀, 관세사와 물류업체의 종합심사는 관세평가분류원 공인심사팀이 담당하도록 업무를 구분하여 운영됨²⁰⁾

- 세관에서는 공인 부문에 따라 공인기준 준수여부 이외에도 특정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심사를 시행할 수 있음²¹⁾
 - 관세사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의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상의 적정성을 포함할 수 있음
 -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및 항공사: 법과 그 밖의 업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화물관리 등의 적정성을 포함할 수 있음

20) 관세청, 『관세연감(2014)』, 2015, p.139,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갱신을 위한 종합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2팀 10명에서 7팀 32명으로 종합심사팀을 운영.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A%B4%80%EC%84%B8%EB%B2%95#liBgcolor>, 검색일자: 2016. 2. 19.

- 특히, 수출입업체의 경우 AEO 공인기준과 8대 통관적법성의 두 가지 분야를 심사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한국의 AEO 제도가 사후세액 심사부서의 기업관리와 연계되어 설계된 것에 기인함
 -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식재산권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8개 분야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가 이루어짐
 -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 통관 행위 전반에 대한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를 심사 대상으로 함

- 또한 수출입업체에 대한 종합심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상담전문관의 통관적법성 정보의 분석과 제공 등 AEO 공인기업의 사후관리 내실화 및 통관적법성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심사를 엄격하게 수행하여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이 제공한 정보 위주로 확인하여 심사하도록 AEO 고시를 개정(제19조)함
 - 기업상담전문관 지원팀(4팀, 16명)을 신설하고 통관적법성 정보 제공(244건)으로 공인기업이 400억원을 수정신고하도록 유도하여 공인기업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지원함²²⁾

〈표 II-8〉 우리나라 종합심사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2013년도 | | 2014년 | | 전년 대비 증감 | |
|----------------|--------|-------|--------|-------|----------|-------|
| | 건수 | 추징금액 | 건수 | 추징금액 | 건수 | 추징금액 |
| 심사 합계 | 21,049 | 9,030 | 16,737 | 9,002 | △20.5 | △0.1 |
| 종합심사 (업체 수) | 24 | 451 | 33 | 332 | 137.5 | △26.4 |

주: 심사합계는 기업심사, 종합심사, 보정심사, 환급심사를 모두 포함
출처: 관세청, 『관세연감(2014)』, 2015, p.132.

22) 관세청, 『관세연감(2014)』, 2015, p.139

2) 종합심사 절차

- 종합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대상 분야를 결정하여 종합심사를 시행하는데, 예외적으로 심사대상 분야를 조정하여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음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AEO 공인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받아야 함
 - 관세사, 물류업체, 중소기업 또는 기업상담전문관의 추천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공인기준 준수 여부만 심사할 수 있는 간이 종합심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인기준 준수 여부만 심사하거나 각 공인기준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간소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종합심사 또한 최초 공인 심사와 같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이루어지되, 기존의 AEO 인증 시 받은 현장심사와 동일하거나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이루어짐
 - 공인기준 준수 여부, 공인기준별 입증서류 제출 여부, 사업장 누락 여부 및 법규준수 점수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친 후, 이에 대한 실사인 현장심사가 이루어짐
 - 현장심사에는 기업상담전문관의 정보제공 사항 및 업체 자율점검 자료, 정기자체평가, 변동사항 보고 및 기업상담전문관의 자율점검 등 사후관리의 충실성 평가 등의 항목이 추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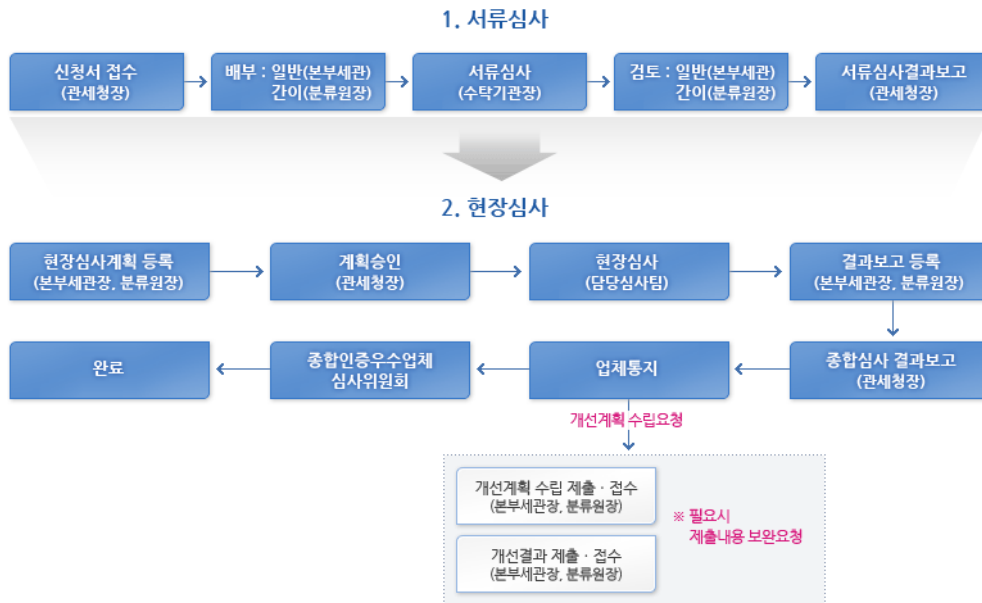
- 심사 결과 평가한 심사대상 업체의 법규준수도가 공인기준에 미달하거나 공인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법규준수 개선계획(보완 포함)을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함²³⁾
 - 공인기업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규준수 개선조치를 이행한 공인기업은 법규준수 개선계획 제출일부 3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 완료보고를 하고, 해당 세관에서는 법규준수 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A%B4%80%EC%84%B8%EB%B2%95#liBgcolor0>, 검색일자: 2016. 2. 19.

평가 후 개선결과를 반영하여 공인기준 점수를 재평가함²⁴⁾

[그림 II-3] 우리나라 AEO 종합심사 절차



출처: 한국AEO진흥협회 홈페이지, <http://www.aeo.or.kr/mber/aeoMberSimView.do>, 검색일자: 2016. 2. 17.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A%B4%80%EC%84%B8%EB%B2%95#liBgcolor0>, 검색일자: 2016. 2. 19.

Ⅲ. 주요국의 AEO 제도 운영 현황과 사후관리

- 본 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의 AEO 제도의 공인기준, 공인절차 등 운영현황과 공인 후의 사후관리를 ① 자율관리, ② 기업상담전문관제도, 그리고 ③ 세관의 AEO 갱신 심사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함
-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위한 주요국으로 아래 표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국가 중 높은 무역순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선정하였음

〈표 Ⅲ-1〉 주요국 선정기준

| 국가 | 제도명 | 시행 | 인증기업 (업체수) | MRA 체결연도 |
|----|---|---------|---------------|-------------|
| 미국 | C-TPAT(Customs -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2001.11 | 10,832 | 2010 |
| 중국 | MCME(Measure of Classified Management of Enterprises) | 2008.4 | 3,453 | 2013 |
| 일본 | AEO(특례인정업자) | 2006.1 | 542 | 2011 |

출처: WCO, AEO Compendium 2015

- AEO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에 앞서 WCO의 SAFE Framework은 전 세계 AEO 공인 기준의 척도가 되므로 이를 살펴보도록 함

1.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SAFE Framework)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조치로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이하 “교토협약”²⁵⁾)을 제정함
 - 교토협약은 통관서류의 표준화와 간소화, IT 기술의 활용, 통관에 대한 세관의 통제 최소화 등 세관절차 간소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동 협약이 1974년에 채택되었을 당시에는, 강제성이 없어 소수의 체약국을 보유하던 중 1999년 개정을 통해 비로소 확산되었음²⁶⁾

- 1999년 개정된 교토협약은 세관²⁷⁾과 무역업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무역원활화를 꾀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관세행정모델을 제시하였음²⁸⁾
 - 세관은 통관환경의 위험관리 방법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업체들이 관세법규를 지키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관세법규의 준수가 우수한 무역업체를 승인된 무역상(Authorized Persons)으로 지정하여 신속통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무역업체가 자율적으로 법규준수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였음

-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증폭된 무역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대한 문제는 개정 교토협약과 결부되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2005년 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하기 위한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에 관한 규범(WCO Framework of

25) 일본 교토(京都)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명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이라 하며, 1999년도 개정 분은 ‘개정 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으로 구분됨. 기존 교토협약은 체약당사국이 9개국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교토협약은 현재 76개국이 체약하였으며, 증가 추세에 있음.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하였음.

26) 정재호·마정화·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8, p.9

27) 관세당국, 관세기관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원문의 내용을 살려 세관(Customs)으로 표현함

28) 정재호 외 2인(2009.8, p.12)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to GlobalTrade, 이하 WCO SAFE Framework)' 이 제정되었음

[그림 Ⅲ-1] WCO SAFE Framework의 제정 연혁 및 구조



출처: 관세청, 「AEO제도 및 국제동향」, 2014.11, p.5

- WCO SAFE Framework의 주요내용은 국제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통합표준의 정립, 세관과 세관, 세관과 민간기업 및 세관과 정부기관 간 협력강화를 추진, 민간 자율심사를 위한 AEO제도 등을 내용으로 함²⁹⁾
 - ① 서문, ② 이익(Benefits-국가/정부, 세관(Customs) 및 민간업체(Business)), ③ 「Pillar 1 세관 간 협력표준」, ④ 「Pillar 2 세관과 민간 간 협력표준」, ⑤ 「Pillar 3 세관과 외국 정부 및 세관과 외국정부기관 상호간 협력 표준」, ⑥ 무역의 지속성과 재개(TRADE CONTINUITY AND RESUMPTION) ⑦ 상호인정약정(MRA)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됨
 - 각 표준은 이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포함함

29) 정재호 · 김미영 · 류태현, 『무역 원활화를 위한 중국의 FTA 통관규정 연구』, 2012.8, p.77.

〈표 Ⅲ-2〉 WCO SAFE Framework의 구조

| 구분 | 내용 |
|-----------------------------|---|
| 1. 서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fe Framwork의 목적 및 원칙 ○ Safe Framwork의 핵심 4요소 ○ 3개의 Pillars에 대해 ○ 역량 배양 ○ 실행 |
| 2. 이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이익 ○ 세관의 이익 ○ 기업의 이익 |
| 3. Pillar 1 세관 대 세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대 세관의 표준 ○ 표준이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사항 ○ 컨테이너화물의 안전을 위한 봉인 관리 |
| 4. Pillar 2 세관 대 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대 민간의 표준 ○ 표준이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사항 |
| 5. Pillar 3 세관 대 다른 정부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대 다른 정부기관의 표준 ○ 표준이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사항 |
| 6. 무역의 지속성과 재개 | |
| 7. 상호인증 | |
| 부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의 정의 ○ AEO 자료의 요소 ○ 미리 선적된 안전한 적하목록 자료 ○ AEO 조건, 요구사항 및 이익 ○ 국제 무역 공급망 내의 화물처리에 관련된 사업을 위한 절차개요 |

출처: WCO,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Guidelines, Benefits to AEO,” 2015. 6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15년 6월, WCO SAFE Framework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³⁰⁾

- WCO SAFE Framework 사용의 촉진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새로운 「Pillar 3 세관과 외국 정부와의 협력 및 세관과 정부기관 상호간 협력」을 추가함
 - 전 세계 공급망 보안 문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의 대응을 보장하고 세관 및 기타 정부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

30) WCO, “WCO Safe Framework package”,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tools/safe_package.aspx, 검색일자: 2016.2.1

- 항공화물과 관련된 사전화물 기적 정보(Pre-loading Advance Cargo Information, ACI)의 표준화, WCO SAFE Framework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정의, 그리고 WCO 위험 관리 개요 1권과 2권의 내용 등이 업데이트됨

가. WCO Safe Framework의 Pillar 2 세관-민간협력의 기준

- WCO SAFE Framework에서 「Pillar 2 세관과 민간업체 간의 협력표준」은 세관과 민간의 국제 화물안전 기준인 AEO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 본장에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함
- 「Pillar 2 세관과 민간업체 간의 협력표준」은 세관의 공급망 관리에 민간 부문을 참여시켜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보장하는 업체에 신속한 통관 및 실질적 이익을 부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³¹⁾
 - 관련 내용은 <표 III-3>에 따라 간략히 구분됨

〈표 III-3〉 WCO SAFE Framework 세관과 민간 간 협력 표준 내용

| 구분 | 내용 |
|----------------------------|---|
| 표준1 파트너십(Partnership) | 세관과 AEO업체는 적절한 보안기준의 결정, 문서화, 자체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실행 |
| 표준2 안전(Security) | 물리적 접근통제 및 보안기준 마련 및 통제절차 수립 |
| 표준3 인증(Authorization) | AEO업체의 혜택에 대한 인증 및 적합성을 부여하는 절차 구축 |
| 표준4 기술(Technology) |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화물의 무결정 보장 |
| 표준5 의사소통(Communication) | 긴급연락망 구축 및 의견교환 |
| 표준6 원활화(Facilitation) | 무역의 원활화 및 수출입관리의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을 도모 |

출처: 정재호·박지우·양지영, 『주요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80.

31) 정재호·박지우·양지영, 『주요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80.

- 「Pillar 2 세관과 민간업체 간 협력표준」의 핵심은 세관당국의 주도적 참여유도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임
 - 국제 무역안전망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과 민간 분야와의 파트너십 (Partnership)은 필수적이며, 세관은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공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AEO 지위를 부여함
 - 지위를 부여받은 AEO업체는 통관절차상의 간소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또한 AEO업체는 공인 후 세관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무역 공급망 안전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발표해야 함

- WCO SAFE Framework에 따르면 AEO는 국제 무역공급망과 관련된 WCO 규정을 준수하면서 소속 관세당국이 인정하는 물품의 국제적 이동에 종사하는 당사자를 말함
 - AEO에는 제조자, 수입자, 수출자, 관세사, 운송인, 운송주선업자, 중개인, 항구 및 공항 터미널운영인, 창고업자, 배송업자 등이 모두 포함됨

- 민간업체가 AEO 공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부록 IV: AEO 조건, 요구사항 및 이익」에 제시된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 AEO 공인기준에는 세관당국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역할과 자격요건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13가지 규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AEO업체의 공인 기준의 지침이 됨

〈표 III-4〉 WCO SAFE Framework의 AEO 공인기준 지침

| 구분 | | 주요 내용 |
|----------|------------------|--|
| 보안 기준 | A. 법규준수 | ○ 일정기간 관세법 등 무역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
| | B. 상업기록관리시스템 | ○ 수출입화물 심사가 가능한 기록시스템 유지 ○ 세관의 접근 허용 및 정보기술 보안조치 도입 |
| | C. 재무건전성 | ○ AEO제도 운용을 위한 재무건전성 보유 여부 |
| | D. 자문, 협력 및 의사소통 | ○ 개별적 또는 협회를 통해 세관과 정보 공유 ○ 의심화물서류에 대한 적절한 세관 통제절차 |
| | E. 교육, 훈련, 인지 | ○ 직원 및 필요시 거래업체에 대한 보안교육실시 |
| | F. 정보교환, 처리 및 기밀 | ○ 당사자 간 전자데이터 교환 완전/적기이행을 추구 ○ 전자데이터 국제표준의 이용 ○ 정보변경 및 오류 예방 ○ 적화목록의 정확성 확보 |
| | G. 화물보안 | ○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른 컨테이너 봉인 이용 및 교부자 지정 ○ 운송기기검사절차 마련(무결성 확보) ○ 화물 및 보관시설 운송기기의 관리 및 통제 ○ 반출절차 마련 ○ 운송 및 하역 보안절차 마련 |
| | H. 운송기기보안 | ○ 운송기기 보안규정 마련 ○ 운송인 보안훈련 |
| | I. 작업장 보안 | ○ 불법침입 방지재료로 건물 건축 ○ 내외부 창문과 출입구 등 잠금장치 설치 ○ 출입구등에 조명 설치 및 인원배치 ○ 미승인자 및 차량 통제절차 마련 |
| | J. 인적보안 | ○ 보안 및 관세관련 범죄행위 조사 ○ 주기적인 배경 검사 ○ 방문자 사진부착 신분증 확인 ○ 퇴직자의 신분증 회수 및 작업장과 정보시스템 접근 차단 |
| | K. 거래업체 보안 | ○ 보안이행 조건을 계약서상 명문화 |
| | L. 위험관리 및 복구 | ○ 비상사태 및 테러에 대한 복구절차 서류화 |
| | M. 평가, 분석 및 개선 | ○ 자체평가절차 서류화 및 정기적 이행, 피드백(Feeddback) |
| 혜택 | 공인 및 검증 | ○ 신속한 화물반출 ○ 검사비용 축소 ○ 고급정보 접근허용 ○ 무역두절 및 위협고조시 특별조치 |

출처: 경운범·이일재, 「AEO의 상호인증(MRA)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4권 제3호, 2013.8, p.27 및 WCO(2015.6, pp. Annex IV/3-14)

- 「부록 IV: AEO 조건, 요구사항 및 이익」에서는 AEO 공인업체에 주어지는 혜택들의 성격과 운영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³²⁾
 - 혜택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며 문서로 되어야 함
 - 혜택은 비(非)AEO 공인업체에 제공되는 절차들보다 더 좋아야 하며, 공인업체가 기존에 존재하는 일반 절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 손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됨
 - 혜택은 의미가 있어야 하며 측정 및 보고가 가능한 것이어야 함
 - 혜택의 사례는 주제별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혜택을 제공하는 행정부는 승인 가능한 혜택의 예시를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함
 - － 동 예시는 WCO 연구사례, WCO 회원국 행정부의 특정운영프로그램, 무역업체들의 요구에서 추려질 수 있음

- WCO SAFE Framework상 AEO의 혜택은 다음과 같음³³⁾
 - 화물 반출을 신속하게 하고 운송시간을 줄이고 창고비용을 낮추는 방법
 - AEO 업체에 가치 있는 정보의 접근성을 제공
 - 무역분쟁이나 고조되는 위험수준의 기간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
 - 새로운 종류의 화물절차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최우선 고려

32) WCO,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Guidelines, Benefits to AEO,” 2015, pp.14~15.

33) 경윤범·이일재(2013.8, p.28) 및 WCO,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Guidelines, Benefits to AEO,” 2015, pp.14~15.

나. WCO SAFE Framework의 AEO 공인 후 관리

1) 자율관리 및 내부통제³⁴⁾

- 「부록 IV: AEO 조건, 요구사항 및 이익」에서 세관당국과 민간은 보안 위협의 평가를 수행하고, 그러한 위협을 축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관찰, 측정, 분석 및 개선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함을 규정함
 - WCO 가이드라인의 일관성 유지에 대한 평가
 - 보안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무결성과 충분성에 대한 보장
 - 물류체계보안의 개선을 위하여 보안 관리 시스템을 증진하기 위한 잠재적 요소를 확인

- 또한 AEO는 위협 평가의 자율관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함을 규정함
 - 특별히 AEO 프로그램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운영에 있어 보안위협을 평가를 수행하고 그런 위협을 감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보안 관리 시스템의 정기적인 자체평가를 확립하고 수행해야 함
 - 자체평가절차와 책임자에 대하여 문서로 기록해야 함
 - 보안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충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다음 기간 (forthcoming period)을 위한 가능한 보안강화를 위한 추천과 지정된 당사자의 피드백, 심사결과를 포함함

- 내부통제의 평가는 세관에서 AEO 인증 신청서를 검토 시 직원, 작업장, 시설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적절한 기업통제의 증거를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됨
 - 「부록 IV AEO 조건, 요구사항 및 이익」에서 세관당국은 AEO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시 다음의 열거된 품질 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됨
 - 관세 및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법규준수 이력사항

34) WCO,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Guidelines, Benefits to AEO," 2015, pp. Annex IV/14~15.

- 관련 법규 준수
 - 국내법에 따른 기업설립 증명자료
 - 영업장의 영속성에 대한 정보
 - 기존의 품질보장시스템의 입증
 - 고위직 관리들의 범법행위 부재
 - 직원, 사무실, 기계 등 자산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회사라는 증거
- WCO SAFE Framework에서는 직접 내부통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WCO의 관련 세미나에서는 각종 기준과 더불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임을 나타내고 있음³⁵⁾

2) 세관관리³⁶⁾

- 「부록 IV: 인증 및 공인절차」에 따르면 세관당국은 AEO 혜택 제공을 위한 검증 절차 또는 품질 인증 절차를 무역업계 대표들과 함께 마련해야 함
 - 세관당국은 민간업체가 상기 절차들, 즉 안전 시스템 및 모범사례 도입에 투자하는 경우 위험 선별 및 검사횟수의 축소, 신속통관 등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함

- 또한 세관당국은 기존의 민관 공급망 보안관리 프로그램으로 입증된 모범사례를 참조하여 WCO SAFE Framework에서 서술된 표준을 준수하는 인증 및 공인절차를 설계하고 구축하여야 함

- 인증 및 공인 절차의 설계는 WCO SAFE Framework를 구축하려는 각 WCO 회원국의 결정사안이므로 인증과 공인절차상의 조항은 지침방향으로 제시됨

35) During the Seminar, the participants identified common principles for granting AEO status, including record of compliance with customs requirements and tax laws, and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s. - Seminar on WCO Framework of Standards and Customs Data Model, 12-14 July 2006, Urumqi, People's Republic of China, Executive Summary, 아시아개발은행(ADB) - 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09.12, p.162)

36) WCO(2015.6, pp. Annex IV/16-18)

가) 인증절차(Validation Procedure)

- 세관당국은 SAFE Framework의 보안표준 및 모범사례 등의 준수를 평가하는 제3의 인증자(Third party validator)를 지정할 수도 있음
 - 인증(Validation)이란 AEO의 공급망 내 절차, 그리고 해당자격을 얻기 위한 모든 관련 절차들을 의미함
 - 인증은 세관당국이나 세관당국이 지정한 제3의 인증자에 의해 전면 심사되어야 함
 - 제3의 인증자(Third party validator)는 실제적인 인증을 위해 세관당국에 의해 권한 위임된 제3자로서 안전위협도 심사나 관련 인증절차의 수행에 있어 세관당국을 보조하기 위하여 고용된 세관소속이 아닌 외부인임
 - 세관당국의 AEO의 승인, 정지, 취소와 같은 AEO 지위나 혜택의 부여에 관한 권한은 이양되지 않음

- 제3의 인증자의 요건으로는 ① 인증시스템에 관련한 경험 및 공급망 안전 표준에 대한 지식, ② 다양한 경제, 경영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식, 그리고 ③ 신속하게 인증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AEO 인증 절차 중에 취득되는 정보는 세관당국 또는 제3인증자와 각 AEO 간 기밀사항이며 제공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본 감시 절차(Monitoring process)는 위협 또는 원인에 근거한 심사(Audits)들로 구성되고, 세관당국과 제3의 인증자가 상기 위협등의 무작위 추출검사가 가능한 장소에서 실시됨

- AEO 인증절차를 관장하는 세관당국과 제3의 인증자, 인증 대상자인 AEO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가짐
 - 세관당국과 제3의 인증자는 인증절차를 수행할 AEO 담당자(Personnel designated

to carry out the validation procedure)가 인증과 관련한 교육 훈련을 받았고, 수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AEO는 이행중인 보안절차와 함께 AEO 공인 취득 의무사항 그대로 인증에 필요한 문서를 관리하여야 함
- 세관당국은 국가 간 상거래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하여 국제 무역업계에 일련의 상이한 요구사항을 부담시켜서는 안됨
- 세관당국과 AEO는 공인과 인증 절차에 대해 점진적인 개선과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나) 검토 및 유지관리(Review and Maintenance)

- 세관당국과 AEO는 정기적인 정보교류와 검토회의를 실시하여 법규 준수 수준을 유지하고 보안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실행 가능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여야 함
 - 상기 검토는 AEO가 신속하게 보안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을 지원하고, 세관당국에는 AEO 운영 표준을 관리하는 절차를 제공함
- 세관당국은 정기적인 정보교류와 인증 절차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 절차의 일부분으로서 AEO에 공인기준 보안지침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를 정기보고서로 작성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음
- 효과적인 AEO 인증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 세관당국은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세관당국의 AEO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여야 함

〈표 Ⅲ-5〉 WCO SAFE Framework상 AEO의 사후관리

| 구분 | 내용 | |
|------------|---|--|
| 위험평가의 자율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위험의 평가를 수행, 위험 감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 ○ 보안 관리 시스템의 정기적인 자체평가의 확립·수행 ○ 자체평가절차와 책임자를 문서로 기록 ○ 다가오는 다음 기간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추천과 지정된 당사자의 피드백, 심사결과를 포함해야 함 | |
| 내부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에서는 AEO 공인 심사 시 신청기업이 제출한 다음의 항목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및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법규준수 이력사항 - 관련 법규 준수 - 국내법에 따른 기업설립 증명자료 - 영업장의 영속성에 대한 정보 - 기존의 품질보장시스템의 입증 - 고위직 관리들의 범법행위 부재 - 직원, 사무실, 기계 등 자산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회사라는 증거 | |
| 인증절차 | 제3의 인증자 | 세관당국에 의해 권한 위임된 제3자로서 안전위험도 심사나 관련 인증절차의 수행에 있어 세관당국을 보조하기 위하여 고용된 세관소속이 아닌 외부인임 |
| 검토 및 유지관리 | 정기보고서 | AEO 공인기준 보안지침에 따라 세관당국에 제공하는 정보 |
| | 모범사례 공유 | AEO프로그램을 받아들인 세관당국은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AEO 프로그램 개발의 논의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여야 함 |

출처: WCO(2015.6, pp. Annex IV/17-18) 참조하여 저자작성

2. 미국

- 급격히 증가하는 국제무역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신속통관을 도모하던 미국 세관당국은 2001년 9.11 테러를 기준으로 국경 및 운송보안의 확보가 미국의 핵심 과제가 되었으며, 국가의 안전을 위한 물류보완을 최우선과제로 삼음
- 국경 및 운송보안 확보를 위해 2002년 11월 25일 서명된 「국토안전보장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에 따라 2003년 2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를 발족하였음³⁷⁾

- 국토안보부(DHS)는 아래의 8성청으로부터 22개의 정부기관 부문을 통합하여 이루어짐
 - 세관 및 국경보호국(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³⁸⁾
 - 관세청(US Customs Service, USCS)
 - 이민귀화국(INS)
 - 국경경비대(USBP)
 - 동식물검역국(APHIS)
 - 운수보완국(Transport Security Administration, TSA)
 - 수사감독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 해안경비대(USCG)

- 2002년 4월 물류안전공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민관 파트너십인 대테러 세관-무역업자 간 파트너십(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이하 C-TPAT)이 창설되었음³⁹⁾
 - C-TPAT은 무역 관련 당사자와 미국 세관당국(CBP)이 협력하여 민간이 자발적으로 법규 및 보안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무역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물 및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무역 흐름을 촉진하는 수출입 물류보안 프로그램임
 -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불공정 무역에 따른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의 제기로 도입되었음
 - 2002년 4월부터 수입화물 보안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었으나 2014년에는 수출업체도 공인대상에 포함이 됨

- C-TPAT은 2006년 10월 13일 항만보안법(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of 2006, SAFE Port Act⁴⁰⁾)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음

37) 한상현·최준호, 「WCO표준(Standards)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보완조치 강화방안」, 『한국관세학회』, 2007. 12, p.83.

38) 본 절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세관당국(CBP)이라고 표현함

39) 정재호·박지우·양지영, 『주요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p.43.

- 2014년 6월, 세관(CBP)은 C-TPAT과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를 통합한 신뢰할 수 있는 무역업자 프로그램(Trusted Trader Program)을 발표하였음⁴¹⁾
 - 동 제도를 통해 세관(CBP)은 각 정부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응용 프로그램 및 검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동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저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기존 무역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새로운 프로그램인 신뢰할 수 있는 무역업자 프로그램(Trusted Trader Program)의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의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 참가자는 동 프로그램 참가 제한이 있다는 것임
 -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 참가 선행 조건이 C-TPAT 기업이라는 점을 볼 때, 세관(CBP)은 동 제도를 통해 C-TPAT과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을 추가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사료됨

- 2015년 현재 미국의 C-TPAT 공인 업체는 10,832개임⁴²⁾

가.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운영 현황

1) 공인대상 및 기준⁴³⁾

- C-TPAT는 공급망 당사자별로 보안 기준(Security Criteria) 및 보안 항목(Security Profile)을 제시하고 본 기준에 맞는 당사자에게는 세관당국(CBP)에서 공인함으로써 공인 업체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C-TPAT는 모든 공급망에 적용되며 공인 대상은 12개로 다음과 같음

40) SAFE Port Act 6 U.S.C. §901 note

41) EY, 『TradeWatch』, 2014.09, p.2.

42) WCO, "Compendium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2015, p.30.

4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미국)』, 2014.09.

- ① 수입업자, ② 수출업자, ③ 항공운송업자, ④ 화물혼재업자(항공운송 혼재업자, 해양운송 중개인, 무선박 운송인(NVOCC), ⑤ 관세사, ⑥ 외국 제조업자, ⑦ 고속도로 운송업자, ⑧ 멕시코의 장거리 운송업자, ⑨ 항만 터미널 운영업자, ⑩ 철도 운송업자, ⑪ 해상 운송업자, ⑫ 제3자 물류업자가 있음
- C-TPAT 공인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보안 기준(Security Criteria)으로는 공급망 당사자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⁴⁴⁾
 - C-TPAT 공인 대상자는 보안 항목별로 정해진 각각의 세부 보안 지침을 이행하여야만 공인을 받을 수 있음
- C-TPAT의 창설 배경이 수입물품에 대한 보안기준 충족을 위함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외국 제조업자에 대한 보안기준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Ⅲ-6>과 같음

<표 Ⅲ-6> 미국 C-TPAT의 외국 제조업자에 대한 보안기준

| 구분 | 내용 |
|-------------------|--|
| 사업파트너 요구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파트너 선정을 위한 문서화되고 검증가능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파트너가 C-TPAT 인증을 받은 경우 C-TPAT 증명서, SVI 번호 등 - 비인증 사업파트너의 경우 WCO의 보안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증 문서 ○ 사업파트너들이 선적 화물의 무결성 개선을 위한 C-TPAT 보안과정 및 절차를 개발하도록 독려해야 함 ○ 사업파트너가 외국 관세행정기관으로부터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 인증을 통지받아야 함 ○ 운송인이 다른 운송인과 도급계약시 C-TPAT 보안기준 충족하는 운송인을 이용하도록 감시해야 함 |
|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보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적입시 적정한 봉인작업(sealing)을 하여 무결성을 유지해야 함 ○ 보안요건은 컨테이너 기준의 PAS ISO 17712표준⁴⁵⁾을 충족 또는 초과해야 함 ○ 컨테이너는 제조업자 통제하에 안전한 영역에 저장되고 보고가 되는 절차속에 있어야 함 |

44) CBP 홈페이지에서 12개의 공인 당사자별 최소한의 보안기준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음, "C-TPAT Minimum Security Criteria and Guidelines", <http://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cargo-security/c-tpat-customs-trade-partnership-against-terrorism/apply/security-criteria> 검색일자: 2016.02.11

45)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준수하는 컨테이너 봉인의 물리적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서

〈표 III-6〉의 계속

| 구분 | 내용 |
|----------------|--|
| 물리적 출입 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받지 않은 물건 또는 외부인에 대한 통제 유지를 위해, 모든 진입 지점에서 사 람들에 대한 신분 확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분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 통제 장치(예: 열쇠, 키카드 등)의 발급, 제거 및 변경에 대한 절차의 문서화 ○ 사진이 부착된 방문자용 신분증을 제시 및 우편물과 배달 화물에 대한 판매자 확인 및 화물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함 |
| 인사 보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예정자와 현재 피고용인들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예정 직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취업 사항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하고, 고용 후에도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와 재조사를 시행함 - 계약이 끝난 직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고,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접근을 없애는 과정을 거쳐야 함 |
| 절차상 보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에서의 화물의 운송, 처리 및 보관과 관련 무결성과 보안 확보를 위해서는 문 서에 대한 통제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의 통관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적법, 완전, 정확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교환, 손실 또는 오류 정보의 진입 예방을 위한 절차 마련 필요 ○ 선적화물은 적하목록상 정보와 대조 후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며 중량, 자벨, 화인 (mark), 개수 등이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함 ○ 화물을 배송 및 수취하는 운전자는 화물이 수취되거나 방출되기 전 명확히 신분 확 인이 되어야 하며 물품 반출입을 적시에 추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화물 불일치 발생시 반드시 해결하거나 조사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한 내용, 불법 또는 의심이 가는 활동이 검출되면, 필요에 따라 세관 및/또는 기타 적절한 경찰 기관에 통지해야 됨 |
| 물리적 보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의 처리 및 저장 시설이 권한 없는 접근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 제조업자들은 장벽치기, 출입구, 주차 시설, 빌딩구조, 잠금장치 및 열쇠통제, 조명, 경고 시스템 및 비디오 감시카메라 등 물리적 보안 지침을 실행해야 함 ○ 알람 시스템과 감시 비디오카메라 등이 하역과 저장 공간에 설치되어 비 허가 접근 을 방지해야 함 |
| 정보기술 보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등 자동화된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할당된 계정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기적으 로 비밀 번호를 바꾸어야 함 ○ IT 보안 정책, 절차, 기준과 관련된 훈련이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가 부적절한 접근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 보안 교육 및 위협 인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상 테러리스트의 위협 인식을 위해 보안직원에 의한 “위협 인식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유지되어야 함 ○ 직원은 상황 전달 및 보고를 위한 절차를 숙지하고 물품의 선적 및 수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훈련을 받아야 함 ○ 직원을 위한 훈련 시행시 적극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함 |

출처: CBP, “Foreign Manufacturer Security Criteria,” 2006.08, 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fm_security_criteria_korean_3.pdf, 검색일자: 2016.02.12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미국)』, 2014.09 참조하여 저자작성

- C-TPAT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침⁴⁶⁾
 - C-TPAT 사이트(<https://ctpat.cbp.dhs.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C-TPAT 회원가입 동의서와 함께 회사 정보를 제출한 다음 60일 이내에 설문서(Security Profile Questionnaire)를 보냄
 - 이때 세관당국(CBP)이 정한 보안 기준(Security Criteria)에 따라 물류 이동 전 과정에 관한 물류보안 항목(supply chain security profile)을 자가 측정 및 작성하여야 함
 - 세관당국(CBP)은 C-TPAT 가입신청서의 부합 판단 후 승인(Certified)을 함

- 세관당국(CBP)은 1년 이내에 C-TPAT의 승인(Certified)된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및 현장을 인증심사(Validation)를 함⁴⁷⁾
 - 현장 실사는 해외 공장, 선적지를 포함하여 물류이동 전 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심사기간은 세관당국(CBP) 사정에 따라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나 10 근무일(10 working days)을 초과하지 않음⁴⁸⁾

- 인증심사 절차(Validation Process)가 완료되어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인증증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를 담당하는 물류보안 전담직원(Supply Chain Security Specialist, SCSS)이 지정됨⁴⁹⁾
 - 물류보안 전담자(SCSS)는 지정 업체의 통관 프로세스를 자문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함

46) KOTRA, 「전문가 기고」 미국 세관의 자발적 프로그램 C-TPAT, 가입해야 하나, 2013.12,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9301&ARTICLE_SE=20302, 검색일자: 2016.02.11.

47) 김석오, 「C-TPAT 활용을 통한 대미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p.11~16, 2013.04, p.13.

48) CBP, “C-TPAT Validation Process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tpat_validation_faqs_3.pdf, 검색일자: 2016.02.11.

49) 김석오(2013.04, p.13)

- 인증심사를 마친 C-TPAT 기업은 주기적으로 법규준수 여부를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최초 인증심사 내용 및 세관당국(CBP)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기반하여 매 4년마다 재심사를 받음⁵⁰⁾
- C-TPAT 인증업체는 법규준수도에 따라 Tier 3(최우수 등급), Tier 2(우수 등급), Tier 1(보통 등급) 등 3단계로 분류됨⁵¹⁾
 -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단 Tier 1로 분류됨
 - 승인 후 인증요건을 갖추면 Tier 2등급으로 분류됨
 - 최종 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면 Tier 3등급으로 분류됨

2) 공인 혜택⁵²⁾

- 세관당국(CBP)은 C-TPAT을 통해 대미국 수입 관련 업체에 대한 보안 정보를 취합하는 동시에 가입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함⁵³⁾
 - 세관검사 완화 또는 면제
 - 우선 반출 및 검사비용 절감
 - 벌금 경감
 - 물류보안 전담직원(SCSS) 지정
 - 기타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C-TPAT 기업의 보안 항목(Security Profile)의 관리수준에 따라 3단계 즉, Tier1, Tier2, Tier3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Tier3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50) WCO, "Compendium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2015, p.30.

51) 김석오(2013.04, p.14)

5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미국)』, 2014.09, pp.95-97.

53) KOTRA, 「美 관세청의 수입업체 사전인증 프로그램 C-TPAT」, 2013.06,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4252&ARTICLE_SE=20302, 검색일자: 2016.02.11.

- Tier 1의 경우 공급망 투명도 및 예측 가능성 향상으로 인해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고객의 신뢰를 증가시키기 위한 간접적 혜택이 있음
 - 자동선별시스템(Automated Targeting System, ATS)⁵⁴⁾ 점수가 낮아짐에 따라 세관당국(CBP)에 의한 화물검사가 감소하며, 정밀 재검사 비율이 줄어들게 됨
 - FAST(Free and Secure Trade, FAST) Lane⁵⁵⁾ 절차를 통한 신속한 수입 화물의 처리가 가능함
 - 수입자 자체평가제도(Importer Self Assessment, ISA) 참여 자격이 부여됨
 - 통합관리 시스템(Status Verification Interface, SVI)을 통한 C-TPAT 구성원 간 정보공유를 할 수 있음
 - 강화된 물리적 컨테이너 보안 및 개선된 보안 추적시스템(tracking system)으로 인한 도난 감소 효과가 있음

- Tier 2의 경우 Tier 1의 모든 혜택과 함께 Tier 1 업체들보다 화물 검사의 빈도가 적음
 - 화물 검사 시 Tier 3 다음으로 검사를 받게 되며, 반입 항구(Front-of-the line)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특권이 있음

- Tier 3은 Tier 1, Tier 2보다 다음에 제시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받게 됨
 - Tier 2보다 더 낮은 자동선별시스템(ATS) 점수로 인해 화물 검사가 감소되며, 화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우선 배정이 되므로 신속 검사가 가능함
 - 테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 항구에서 화물의 신속 반출을 허용하는 'Green Lane'을 이용함으로써, 물품 선적 시 검사 절차를 없애서 신속하게 수출 통관할 수 있음

54)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대신 세관당국(CBP)은 위험을 보유한 컨테이너를 선별하기 위해 이 점수를 이용함. 위험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낮음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미국)』, 2014.09.

55)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및 멕시코 기업 중에서 CBP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통관제도임. 출처: 김진규·김현지,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9권 pp.167-188, 2011.2, p.179.

- C-TPAT 와 우리나라 AEO와 비교할 경우, 현장심사가 종료된 Tier 2부터 정식 AEO 공인업체로 볼 수 있음⁵⁶⁾

나. C-TPAT 사후관리 현황

1)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Annual Review of Security Profile)⁵⁷⁾

-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의 검토는 C-TPAT 포털에 등록했던 C-TPAT 기업의 정보 및 보안항목을 매년마다 업데이트하고 동 내용을 세관당국(CBP)이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C-TPAT 가입시 정기 자체평가(yearly self assessment)가 조건으로 수록되어 있음
 -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는 기존의 정기 자체평가에서 이름이 변경된 것임
 - 1년 동안 기업 정보에 변동된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기업은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검토할 의무를 가짐
- 동 보고서는 물류보안 전담직원(SCSS)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다가올 검증을 준비하게 해주고, C-TPAT 가입자의 안전현황에 대한 재평가를 가능하게 함
 - 물류보안 전담가(SCSS)는 업데이트된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반려할 책임을 가짐
 - C-TPAT 가입자는 제공된 90일 안에 안전항목 및 회사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
 -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 작성 대상자는 이메일을 통해 대상자임을 통지받거나 C-TPAT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를 통해 세관당국(CBP)는 현재 기업이 물류보안 규정(policies)과 절차(procedures)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56) 김재일,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 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7, p. 101.

57) CBP, "Supply Chain Annual Security Profile Review(Formerly Self Assessment)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0.12.13.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기업의 경우 물류보안 규정과 동 절차에 대한 철두철미한 검토를 진행할 수 있고 기업의 안전관리 및 물류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련된 중요한 수정사항을 만드는 계기가 됨

-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업무를 할당받은 자로서 검토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음

- 다음의 기업 및 물류보안 정보는 반드시 검토 및 업데이트되어야 함
 - 회사 이름
 - 이메일 주소
 - 회사 주소
 - 회사 내 담당자
 - 회사 전화
 - 임직원 수
 - 사용 중인 수입자 기록(Importer of Record, IOR) 번호
 - 세관(CBP) 수입자 채권(Importer bond) 번호
 - 적용 가능한 경우 표준 운송업자 코드(Standard Carrier Alpha Code, SCAC)
 - 제조자 식별 번호(Manufacturer Identification Number, MID)
 - 제공한 안전항목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내용 및 날짜, 국제물류 파트너가 회신한 보고서(Partner Response Box)의 모든 최신 정보를 첨부
 - 기업의 검증단계 또는 C-TPAT 검증팀 방문에 의해 확인된 안전관리 사례의 개선 방안
 - 기업의 공급망 보안에 대한 위험평가 프로세스의 설명
 - 모든 자체 감사(self audits) 또는 기업의 보안 절차 과정의 설명
 - 가입된 모든 상호인증프로그램(mutual recognition programs)
 - 특히 회사 이름, 사용중인 수입자 기록(IOR)번호, 세관(CBP) 수입자 채권번호 및 표준 운송업자 코드(SCAC)는 변경 발생시 즉시 물류보안 전담자(SCSS)에게 통지해야 함

- C-TPAT 기업은 국제공급망 안전 위험평가(International Supply Chain Security Risk Assessment)를 통해 확인된 안전 절차상 위해 요소와 취약점을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에 반영하여 수정 및 보안할 책임을 갖고 있음⁵⁸⁾
 - 위험평가의 FAQ에 따르면 위험평가는 기업의 물류보안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위험평가를 통해 얻은 정보는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에 포함되어 향후 검토에 사용되어야 함
 - 위험평가의 핵심 내용은 위험이 전제된 상황에서의 문제 처리방법을 이용하여 보안에 대한 위해 환경 검사와 기업의 공급망(supply chain)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위험평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임
- 만약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 업데이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C-TPAT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음

2) 국제공급망 안전 위험평가(International Supply Chain Security Risk Assessment)⁵⁹⁾

- 국제공급망 안전 위험평가(International Supply Chain Security Risk Assessment 이하 위험평가)란 C-TPAT 공인 기업의 국제 공급망 파트너의 보안에 대한 위해항목 및 취약점을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임

58) 위험평가(Risk Assessment)란 모든 민간부분(all business area)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등급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임.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국내 불안, 테러 행위, 노동 파업등은 모든 기업이 고려하는 위해항목에 속함. C-TPAT 목적을 위해, 위험평가의 범위는 더욱 제한적으로 다뤄져야 하므로 여기서 국제 공급망 보안 위험 평가(International Supply Chain Security Risk Assessment)란 C-TPAT 기업의 국제 공급망 파트너의 보안에 대한 위해항목 및 취약점을 조사하는 국제 공급망 보안 위험평가로 정의됨. 수출의 경우 물품 분배를 위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장소 즉, 수출을 위해 물품이 제조된 곳, 포장된 곳, 선적된 곳에서부터 발생된 각각의 장소에 대한 위험평가임. 위험평가는 또한 동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을 경감시키는 계획을 포함시켜야 함 - 출처: CBP, "C-TPAT Glossary of Terms"

59) 김재일(2014.7, pp.47-52), CBP, "5 Step Risk Assessment Process, C-TPAT Training Seminar," 2010.3, CBP, "C-TPAT's Five Step Risk Assessment Process," 2014.08 참고하여 저자 작성

- C-TPAT는 미국 세관과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위험관리개념을 통해 건전한 물류 공급망을 추구함으로써 무역업계의 자체적인 법규준수 능력을 증진하도록 지원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위험평가는 이런 측면에서 자율적 위험관리 체계라 볼 수 있음

- C-TPAT 가입 조건으로 가입 신청기업은 국제공급망 파트너에 대한 위험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서류화하여 최소한 1년마다 제공해야 함⁶⁰⁾
 - 김재일(2014.7, p.47)은 ‘C-TPAT 기업은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토대로 최소한 일년에 한 번 혹은 고조된 위협, 안전기준 위반 또는 동 사건과 같은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C-TPAT 최소 보안 기준에 근거하여 자사의 공급망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가) 위험평가의 주체 및 세부기준

- C-TPAT은 공급망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위해 관리 주체를 13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관리의 효과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8개의 안전관리 조건을 <표 III-7>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60) CBP(2014.08, p.4)

〈표 Ⅲ-7〉 미국 C-TPAT 안전관리 주체 및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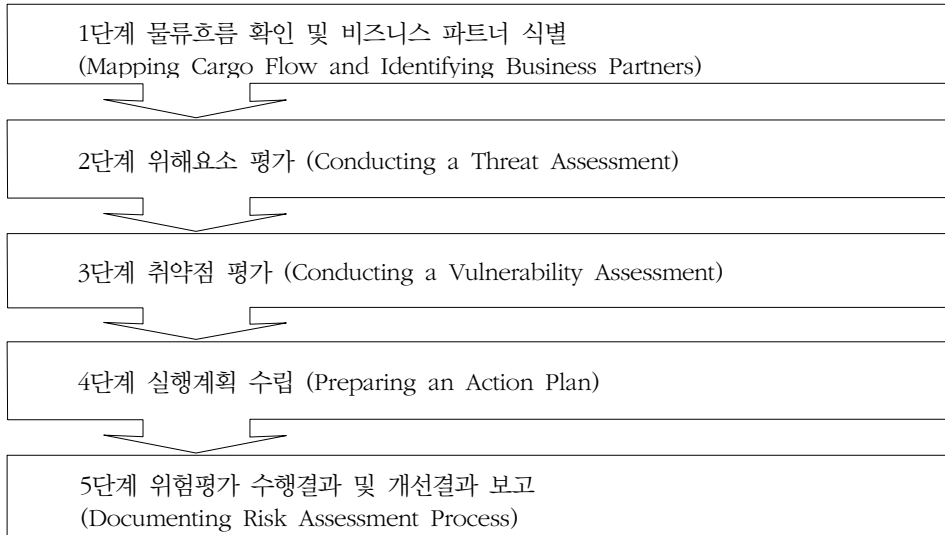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관리 주체 | 수입 업체 | 운송인 | | | | | 혼재업자 | | | 3PL | 외국 제조 업자 | 관세사 | 항만· 터미널 운영인 |
| | | 항공 | 해상 | 철도 | 도로 | 장거리 (멕시코) | 항공 | 해 상 | 일 반 | | | | |
| ▽ | | | | | | | | | | | | | |
| 안전 기준 |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보안 | | 물리적 출입통제 | | | 인사보안 | | | 절차상 보안 | | | | |
| | · 컨테이너 검사 · 트레일러 검사 ·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봉 인 | | · 사원 · 방문자 · 배달(우편 포함) ·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증 요구 및 제거 | | | · 채용전 확인 · 배경 점검/조사 · 해고절차 | | | · 문서처리 · 적하목록 절차 · 선적 및 인수 · 화물 불일치 | | | | |
| | | 물리적 보안 | | 정보기술 보안 | | 보안교육 및 위협인지도 | | 사업 파트너 요구조건 | | | | | |
| | | · 울타리· 게이트 및 초소 · 주차· 건물구조· 조명 · 잠금 장치 및 열쇠 통제 · 알람장치 및 비디오 감시 카메라 | | · 암호보호 · 책임 | | | | · 보안절차 · 현장 · 세관의 공급망 보안 · 프로그램의 참가 및 인증 · 보안절차 | | | | | |

출처: 김재일(2014.7, p.47)

나) 위험평가 프로세스

- C-TPAT 공인기업 즉, 안전관리 주체들은 다음의 5단계(Step)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통
해 자율적으로 공급망의 안전 무결성을 확보해야 함

[그림 Ⅲ-2] 미국 5단계 위험평가 프로세스 체계도



출처: CBP, “5 Step Risk Assessment Process, C-TPAT Training Seminar,” 2010.3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물류흐름 확인 및 비즈니스 파트너 식별은 물품의 생산(제조)국에서 수입유통단계까지의 무역 공급망 전반에 걸쳐진 직·간접된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를 식별하는 것을 뜻함
 - 비즈니스 파트너 식별을 위해 각 주체는 자발적으로 선적서류(B/L, 포장명세서 등)를 통해 물류흐름을 점검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통관 서류제출 요구, 방문 또는 심사를 하여야 함

- 위협요소의 평가에서 위협요소란 테러, 밀수, 밀입국, 조직범죄와 같이 물류 흐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공개된 자료를 통해 식별하는 것을 뜻함
 - 공개된 자료(open sources)란 정부 또는 민간기업의 인터넷 자료, 위협요소 평가대상국의 지점의 정보, 실효중인 국내외 법, 무역 및 보안 단체, 기관의 정보 및 지정된 C-TPAT의 물류보안전담가(SCSS)의 평가가 있음
 - 식별된 위협요소의 등급을 [그림 Ⅲ-3]과 같이 평가하며, 이는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4단계의 실행계획 수립, 5단계의 위험평가 수행결과 및 개선결과 보고와 연계됨

[그림 Ⅲ-3] 미국 C-TPAT 위해요소 평가 모듈 지침

| Threat Assessment: An assessment of a criminal or terrorist presence within a jurisdiction integrated with an assessment of potential targets of that presence and a statement of probability the criminal or terrorist will commit an unlawful act. The assessment focuses on the criminal's or terrorist's opportunity, capability, and willingness to fulfill the threat. | | | |
|---|-------------|--|--|
| 1 – Low Risk — No recent activity/intelligence information. | | | |
| 2 – Medium Risk — No recent incidents/Some intelligence/information on possible activity. | | | |
| 3 – High Risk — Recent incidents and intelligence/information. | | | |
| Note: For C-TPAT purposes, a "3" for any Threat Risk Factor below results in a "High Risk" rating for the supply chain. | | | |
| Partner: SP Trucking | | | |
| Location: British Columbia | | | |
| Country/Region: Canada | | | |
| Threat Risk Factor | Risk Rating | Activity | Source of Information |
| Terrorism (Political, Bio, Agro, Cyber) | 2 | Threats posed by terrorism within Canada, particularly the radicalization of domestic extremists, has been clearly demonstrated through... |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www.csis.gc.ca |

출처: CBP, "C-TPAT's Five Step Risk Assessment Process," 2014.08, p.7.

- 취약점 평가란 위해요소 평가에서 식별된 국제공급망의 취약점으로 테러나 기타 범죄에 이용 가능한 요소들을 C-TPAT의 최소 보안 기준을 토대로 재평가하는 것을 말함
 - 취약점 평가의 대상은 국제공급망상의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직접 계약한 관계 및 하청관계가 포함됨
 - 취약점 평가의 대상이 되는 요소는 국제공급망 파트너의 업무처리 절차 식별, 국제공급망 파트너가 최소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및 국제공급망 파트너의 안전관리기준 준수도 측정이 있음
 - 취약점 평가의 방법은 C-TPAT인증 여부 확인(예: C-TPAT 증명서, SVI 번호 등), 상호인정약정(MRA) 상대국 AEO인증 확인, C-TPAT 보안 기준의 충족여부 서면조사, 회사 담당자 및 해외 에이전트의 현장 방문, 사업보고서의 검토, C-TPAT 보안 기준의 준수 확인 및 제3자 평가가 있음

- 상기 3단계를 거친 후, 발견된 위험들을 해결하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이를 위해 김재일(2014.09, p.47)은 ‘비즈니스 파트너는 인력, 재정, 기술 등 가용자원의 범위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C-TPAT 기업은 앞의 1~4단계 절차를 걸쳐 국제공급망상 안전관리 수준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하여 세관당국(CBP)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위험평가 수행 결과 및 개선 보고에는 <표 Ⅲ-8> 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표 Ⅲ-8〉 미국 위험평가 프로세스 결과 보고시 포함 사항

-
1. 일자별 위험평가 프로세스 수립 여부
 2.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최신화 또는 백업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 여부
 3. 신규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급계약 체결시 안전기준에 대한 평가 수행여부
 4. 안전관리 위험평가 수행 주기
 5. 안전관리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기업운영 정책 등 반영 주기
 6. 자체 안전관리 위험평가 방법
 7. 국제공급망상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방법
 8. 발견된 안전관리상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결과 확인 방법
 9. 각 위험관리 요소별 핵심 담당자에 대한 훈련 방법
 10.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및 관리프로세스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

출처: 김재일(2014.7, p.51) 및 CBP(2010.3, p.20)

3)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mporter Self Assessment, ISA)⁶¹⁾

가) 개요

- 미국 세관당국(CBP)는 수입자가 미국법을 최대한 준수함과 동시에 수입과 반입허용 물품의 촉진을 위해 세관서비스를 개선하였고 이는 C-TPAT와 기업상담전문관 및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mporter Self Assessment, ISA)로 나타남
 -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는 Federal Register Notice 67 FR 41298을 통해 공식적

6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관세청, 2009.12, pp.69~76.

으로 발표되었음

-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는 2002년 6월 C-TPAT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세관 당국(CBP)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우수한 업체로부터 매년 자율 심사결과를 보고 받음으로서 기업 관리를 대신함
 - 세관당국(CBP)과 수입자 간 협력관계(MOU)를 구축함으로써 세관은 일정기간 심사를 면제하고, 기업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
 - 수입자는 세관당국(CBP)에 무역거래의 정확성을 입증할 내부통제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며 매년 자율점검을 해야 함

-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의 참여업체는 수입거래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자율점검뿐만 아니라 신고오류는 자진신고함으로써 세관의 심사량 감소를 도모하고 평소 법규준수도 관리를 통해 관세심사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C-TPAT은 물류보안파트너십의 성격임에 반해,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는 무역법규 준수파트너십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음⁶²⁾
 -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는 파트너십과 자율(self-governing)을 기본원리로 하고 맞춤형지원서비스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C-TPAT과 유사하나,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는 무역법규 준수를, C-TPAT은 공급망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이 다름

- 내부통제시스템이 우수한 업체가 스스로 관세 거래의 자율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는 해당 업체가 관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제를 개발하여야 함⁶³⁾
 - 수입자는 1995년 12월판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감사표준 78(Auditing standards 78)에 의해 인정된 정의 및 해설에 기반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개발해야

62) 송선옥, 「미국 관세심사의 기업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3호, pp.33~55, 2009.6, p.36.

63)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09.12, p.74)

함⁶⁴⁾

- 또한 회계기록에서부터 세관당국(CBP)에 신고하는 가격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관과 관련된 비용 또는 지급기록 및 대체 시스템에 대한 감사기록을 보유해야 함

나)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의 기준 및 혜택

-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함⁶⁵⁾
 - C-TPAT의 모든 이익을 적용받는 일원일 것
 - 미국에 주소를 둔 수입업자로서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 2년간의 수입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세관업무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영업기록체제를 유지하여야 함⁶⁶⁾
 - 적용되는 모든 세관규정을 따를 것에 동의하는 자율심사양해각서(ISA MOU)와 자율심사 질문서(ISA questionnaire)를 작성해야 함
 -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 이용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할 것
-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는 관세심사방법의 하나인 집중심사제도(Focused Assessment Program)와 동일하게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를 위한 구성요소로 다음의 5가지 요소를 포함함⁶⁷⁾
 -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은 조직의 풍조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내부통제 구성요소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며 세관의 법규준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환경을 조직 전체에 확산시키는 것임
 - 세관의 법규준수를 지지하는 회사 정책수립, 세관과의 협조적인 관계, 교육, 카운슬

64)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09.12, p.74)

65) CBP, "Importer Self Assessment Program: General Notice," pp. 3~5, 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isanotice_3.pdf 검색일자: 2016.02.17

66) 내부통제를 설정하고 문서화하며 이를 이행하고 위험에 기초를 둔 주기적인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한 시스템이어야 함. 테스트결과를 3년간 유지하여야 하고, 세관 요구시 제출 가능해야 함. 또한 내부통제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행과 재무기록에서부터 세관신고서까지 감사기록(audit trail)을 유지하여야 함 - 출처: 한국재정학회, 「기업심사의 신뢰성에 미치는 요인분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0.12, p.69.

67)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09.12, pp.75~76) 및 송선욱(2009.6, p.40)

링, 그리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세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적격성 확보, 세관 법규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직원에게 책임 및 권한을 부여, 세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중요성 강조 등의 조치로 이행됨

- 위험평가(Risk Assessment)는 세관당국(CBP)의 법규준수에 방해가 되는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회사의 세관관련 업무 운영을 분석하는 것임
 - 위험평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루어져야 하며 위험이 식별되면 담당 관리자는 해결 가능한 내부통제장치를 제시하여야 함
- 통제활동(Control Activities)은 세관당국(CBP)의 법규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상 절차(day-to-day procedures)로서 관리자의 지침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는 정책(policy), 절차(procedure), 기법(technique) 및 메커니즘(mechanism)을 말함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Information & Communication)은 세관당국(CBP)의 법규준수를 위해 정보를 축적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조직 내 기능활동의 상하좌우를 통한 정보의 이동을 포함함
- 모니터링(Monitoring)은 관세관련 업무수행의 활동성과에 대한 감독을 의미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업무성과의 질에 대한 평가, 심사 및 기타 검토의 결과가 신속히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등을 의미함
 -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정상적인 활동 중에 일어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별평가(separate evaluation)가 포함됨
 - 개별평가(separate evaluation)는 적절한 기술을 가진 회사의 내부감사자, 외부감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통제 설계의 검토와 통제활동의 직접적인 테스트를 포함함

〈표 Ⅲ-9〉 미국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요소

| 구분 | 내용 |
|--|--|
| 통제환경 (Control Environment) | 1. 청렴성 및 윤리적 가치(Integrity and Ethical Values) 2. 적격성에 대한 관리(Commitment to Competence) 3. 경영진의 철학 및 경영스타일(Management's Philosophy and Operating Style) 4. 조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5. 권한과 책임의 부여(Assignment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6. 인사 정책과 실행(Human Resource Policies and Practices) 7. 감독그룹(Oversight Groups) |
|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 1. 활동 수준에서의 목표 수립(Establishment of Activity-Level Objectives) 2. 위험 식별(Risk Identification) 3. 위험 분석(Risk Analysis) 4. 변화 시기의 위험 관리(Managing Risks During Change) |
| 통제활동 (Control Activities) | 1. 세관(CBP) 활동에 대한 일반적 정책내용(General Application) 2. 통제활동의 공통된 범주(Common Categories of Control Activities) |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Information & Communication) | 1. 세관(CBP)활동에 대한 정보(Information) 2. 커뮤니케이션의 형식과 방법(Forms and Means of Communication) |
| 모니터링 (Monitoring) | 1. 지속적인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 2. 독립 평가(Separate Evaluation) 3. 문제 해결(Issue Resolution) |

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09.12, p.77~85) 참고하여 저자작성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 가입 업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음⁶⁸⁾

- 세관(CBP)으로부터 법규준수, 위험평가, 내부통제, 세관심사, 자료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문, 지도 및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상담전문관, 심사자, 무역 분석가로 구성된 세관 자문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분석지원을 포함한 납세신고무역자료를 세관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지원받으며 기업상담전문관에게 비상연락망으로 연락 가능함

68) 한국재정학회(2010.12, pp.69~70) 및 송선욱(2009.6, p.36)

- 집중심사(Focused Assessment), 기획심사(Quick Response), 환급, 외국무역지역을 포함한 포괄적 심사를 위해 설정된 심사공동관리(audit pool) 대상에서 제외됨
 - 단, 특별한 이유에 의해 실시되는 현장심사 대상에는 포함됨
 - 자율심사를 통해 업체의 관세행정 오류를 미리 수정 가능하므로 사후 추징에 따른 재정적 손실이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됨
- 가산세 부담의 위험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사업 영위가 가능함
 -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이행하는 수입업체는 보다 정확한 수입신고자료를 제공하므로 세관의 개입 및 관련된 세관업무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음
 - 사전 자진신고(prior disclosure)나 사후신고절차(customs post-entry procedures)를 통하여 예상치 못한 벌과금 부과, 가산세 부담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

4) 세관관리(재심사)⁶⁹⁾

- 재심사(Revalidation)는 세관(CBP)의 최초 심사 이후의 단계로서, C-TPAT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계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확인하는 절차임
- 재심사 대상은 C-TPAT 등급 Tier 2 and Tier 3임
- 재심사의 주기는 최초 심사의 다음연도부터 4년 중 1번 이상(not less frequently than once)으로 진행함
- 세관(CBP)의 재심사를 위한 연간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포함함
 - 재심사 이행의 측정도구
 - 재심사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의 평가
 - 다음해에 진행될 재심사 대상의 수

69) U.S Safe Port Act SEC.219

5) 기업상담전문관 제도(Account Management, AM) 및 CEE기관(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

가) 기업상담전문관 제도(Account Management)⁷⁰⁾

- 미국의 관세행정기관은 기업을 협력자가 아닌 집행대상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1990년대 이후로 증가하는 통관수요를 행정인력이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기업상담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를 도모함⁷¹⁾

-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M)제도는 무역 법규위반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세관이 지속적인 교육자료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규준수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반복적인 기업의 오류를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⁷²⁾
 - 적용법령은 1993년 제정된 세관현대화법(the customs modernization act)이며 1997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함
 - 기업상담전문관들은 무역위험의 분석, 접근을 위해 시스템적으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하고, 자율적 법규준수제고를 위해 기업이 개선조치를 하도록 지원함

- 기업상담전문관의 역할은 기업과 세관 간 또는 다른 정부기관과의 조정자로서 활동하면서 기업위험의 분석, 평가, 조치계획 수립, 관련 문제점의 해결, 교육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함
 - 기업상담전문관은 기업법규준수도의 극대화, 기업관리 및 심사과정에서 국가 통일성 보장, 자율법규준수 확대, 기업과 관세청과의 의사소통개선, 기업관리 효율성 증대의 책임이 있음

70) 성남길 외 4인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제도의 해외 사례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9.12, pp.34~71.

71) 성남길 외 4인(2009.12, p.34)

72) 성남길 외 4인(2009.12, p.34)

- 세관당국(CBP)에서 관리하는 수입업체는 위험성 정도에 따라 <표 III-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4개로 구분되는데 고위험 가능성이 있는 업체(Higher level of risk)를 대상으로 기업상담전문관이 관리 대상을 지정함

〈표 III-10〉 미국 기업상담전문관의 관리 대상

| 위험 구분 | 관리하는 자 |
|-----------------------|---|
| Highest level of risk | 집중심사(FA) |
| Higher level of risk | 기업상담전문관 (위험성이 있어 Highest로 갈 위험이 있는 업체를 관리) |
| Lower level of risk | 수입자 자율평가제도(ISA) (세관이 관리하지 않아도 되나 가이드 자료등을 제공하고, 가이드 필요성에 따라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업체 지원) |
| Lowest level of risk | 세관이 개입하지 않음, 회사자체가 내부통제에 의해 관리함 |

출처: 성남길 외 4인(2009.12, p.39) 참조하여 저자작성

- 기업상담전문관의 위험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됨
- 잠재적 고객에 대한 정보수집
 - 고객의 과거 법집행 이력 등을 통해 위험을 분석 및 평가
 - 상기 위험을 근거로 활동계획을 개발, 조치하고 위험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활동에 대한 규정 수립
 - 결과보고
- 기업상담전문관은 국가기업상담관(National Account Manager, NAM)과 세관기업상담전문관(Port Account Manager, PAM)으로 구분됨⁷³⁾
- 국가기업상담관(NAM)은 국제무역국(Office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속되어 기업상담전문관을 전문으로 활동함
 - 국제무역국은 세관당국(CBP)의 무역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규준수조치기능을 보유함

73) 성남길 외 4인(2009.12, p.36)

- 세관기업상담관(PAM)은 현업관리국(Office of Field Operations)에 소속되어 지적재산권, 원산지 등 다른 업무와 같이 기업상담전문관을 겸업으로 활동함
 - 현업관리국은 화물검사, 관세 및 제세의 부과, 수수료 징수, 수입항구에서의 벌금 및 과징금 평가 등을 관리함

- 국가기업상담관(NAM)은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 승인기업 및 동 제도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평가함⁷⁴⁾
 - 국가기업상담관(NAM)은 매년 기업의 자율 점검 후 확인된 내용과 내부통제 변동 보고 등을 포함해서,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기업의 법규준수도에 대해 모니터링 할 책임이 있음

- 2009년 수입자 중 상위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상담전문관을 배치하였으며 이 중 국가기업상담관(NAM)은 40명으로 55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음

- 세관(CBP)의 무역 변환 노력의 일환으로, 각 기업상담전문관은 CEE 기관(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음

- 나) CEE기관(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⁷⁵⁾
 - CEE 기관(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은 C-TPAT 및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기업의 세관 업무처리를 위해 2011년 설립된 기관으로서, 물품 거래기준(Transaction)이 아닌 산업군 또는 업체별(Account)로 세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운영기관임
 - 부족한 세관 행정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실업체(Account)를 중심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념임

74) 성남길 외 4인(2009.12, pp.41~43)

75) 김재일(2014.7, pp.87~94)

- 2014년 1월 현재 10개의 CEE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C-TPAT 및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참가 업체 중 CEE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CEE 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 CEE 기관은 C-TPAT나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와 동일하게 성실업체중심의 업무처리방식(Account Management)의 제도라 볼 수 있으나 세관업무를 개별 통관지 세관(Port of Entry)에서 처리하지 않고 산업별 또는 업체별 분담된 CEE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상이함
 -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등 산업별로 전략적으로 선정된 지역별 CEE 기관에서 웹방식의 전산 시스템에 기반하여 특정산업의 성실 업체들의 수입통관 등 세관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방식임
 - CEE 기관 설립 이전에는 각 통관지 세관별로 업무처리가 상이하여 업체관리의 허점이 노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CEE 기관이 설립됨
- 2014년 기준 CEE 기관 근무인원은 약 60여명이며 법률자문관, 수입전문관, 수입신고(Entry)전문관, 정보분석관, 국가기업상담관(NAM), 물류보안 전담직원(SCSS), 심사전문관 등 다양한 포지션을 지닌 요원이 근무하고 있음⁷⁶⁾
- CEE 기관은 주로 세관 통관업무 중 사후정산활동⁷⁷⁾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는 수입신고절차, 사후 심사업무, 쟁송, 화물반출신고 및 납세신고 후 세액 정정 등이 있음
- 또한 세관(CBP)은 2013년 10월, 업무통일성 및 효율적 단속 업무 등 CEE 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한국 관세청의 중앙 관세분석소에 해당하는 LSS(Laboratories and Scientific Services)를 CEE 기관에 연계하였음⁷⁸⁾
 - 각 CEE 기관에는 LSS소속의 센터 기술 상담자(Center Technical Adviser, CTA)가

76) 김재일(2014, p.89)

77) 19 USC 1500 및 19 CFR 159.1에 따른 정산(Liquidation)은 화물반출신고(Entry)와 수입신고(Entry Summary)를 정산 및 조정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된 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함 - 출처: 김재일(2014, p.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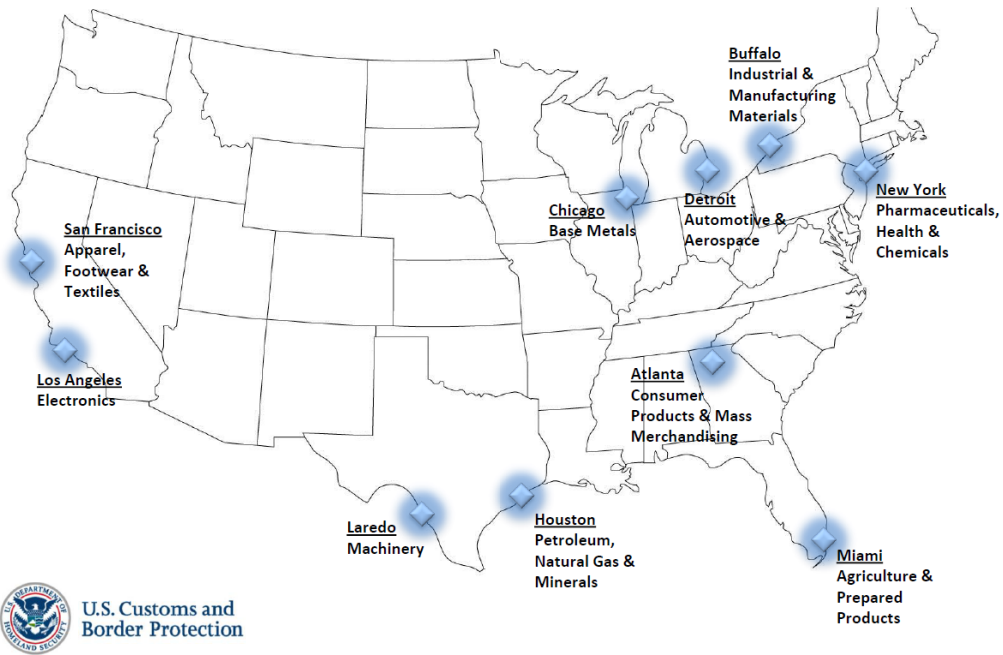
78) 김재일(2014, p.91)

상주하면서 화물신고 또는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 원산지결정,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함

- 2015년 현재 CEE 기관은 뉴욕, LA를 포함하여 총 10군데 지역에 산업별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Ⅲ-4] 미국 CEE기관 분포 지역

Current Centers of Excellence and Expertise



출처: CBP, <http://www.cbp.gov/trade/centers-excellence-and-expertise-information>, 검색일자: 2016.02.12.

3. 중국

- 중국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 GACC; 海关总署)는 1991년부터 증가하는 화물 및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 위험도에 따라 기업을 등급화하여 관리하였음⁷⁹⁾
 - 중국은 1991년 3월부터 기업분류관리제도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기업의 경영관리상황, 수출입신고현황, 세관법령등의 성실준수였으며 동 내용을 바탕으로 A, B, C, D 류의 4등급으로 차등 분류 및 동태적으로 관리하였음

- 이후 2001년부터는 홍·흑색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부터 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였음⁸⁰⁾
 - 홍·흑색제도란 관할 구역 내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과 가장 불성실한 기업을 분류·관리하는 중국 해관의 기업관리방법임
 - 선정된 홍색 또는 흑색 기업의 명단은 해관총서의 홈페이지에 공개함과 동시에 전국 세관의 통관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홍색기업에게는 통관상 편의조치를 제공하고 흑색기업은 법규준수를 위한 엄격한 세관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였음

- 2008년 4월 1일부터 세계관세기구(WCO)의 SAFE Workframe 도입을 위해 종전 4등급 기업분류 및 홍·흑색제도를 폐지하고 5등급 기업분류관리제도를 시행하였음⁸¹⁾
 - 해관총서령 제170호 「중화인민공화국세관기업분류관리방법」 제정(2008년 2월 1일)을 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권장, 세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수출입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보장하도록 하였음⁸²⁾
 - AA류 및 A류 기업은 통관편의 부여, B류기업은 일상적인 관리, C류 및 D류기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였음

79) 성남길 외 4인(2009.12, pp.72~73)

80) 정형곤·나승권·노유연,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8, p.43.

81) 성남길 외 4인(2009.12, pp.72~73)

82) 이후 개정 해관총서령 제197호(2011.1.1.) 및 개정 해관총서령 제225호(2014.12.1.)을 거침

- 국제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해관은 2014년 12월 1일 발효된 해관총서령 제225호에 의거하여 중국 기업의 신용 및 위해요소관리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업평가기준을 도입함
 - 기존의 기업분류관리제도의 공인 기준을 폐지하고 미국의 C-TPAT 및 기타 외국의 AEO제도를 수렴한 새로운 평가기업을 제시함
 - 이는 중국해관이 기업의 자체평가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 2015년 2월 28일 기준으로 중국 AEO제도에 가입된 기업의 수는 3,453개임⁸³⁾

가. 중국의 AEO 운영 현황

1) 기업분류관리제도(Measures for Enterprise Credit Management, MECM)

가) 공인대상 및 기준

- 중국 기업분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① 세관에 등록된 수출입화물의 수발송인, ② 세관에 등록된 통관기업, ③ 세관에 등록된 가공기업, ④ 기타 세관총서가 인정한 기업이 있음⁸⁴⁾

- 기업분류관리제도에 의해 승격을 원하는 기업은 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스스로 신청해야 하며 C와 D류로의 하향조정은 세관에 의해 실행됨⁸⁵⁾
 - 일반적으로 기업분류관리제도에 신규 등록한 기업은 B류 기업으로 인정됨

- 중국 기업분류관리제도의 인증 기준은 일반요건과 경영관리 및 무역안전요건으로 분류되며, 이 중 무역안전요건의 경우 WCO의 규정을 대부분 채택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83) WCO, "Compendium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2015, p.44.

84) 정형곤 외 2인(2010.8, p.46)

85) 상동

하고 있음⁸⁶⁾

○ 중국은 주요국에서 시행하는 AEO 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경영관리 및 무역안전 요건에 반영시킴

□ 중국 기업분류관리의 AA류 기업을 일반적인 AEO공인 기업으로 보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에 대한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표 III-11>과 같음

<표 III-11> 중국 기업분류관리 AA류 인증 기준(수출입화물 송수하인)

| 구분 | 내용 | |
|--------------------|---|---|
| 일반요건 | A류 관리 1년 이상 적용 전년도 수출입총액 50만달러 이상 세관관리, 기업경영관리, 무역안전 요구사항이 기준에 충족 경영관리상황보고, 회계심사보고서, 수출입업무상황표 보고 | |
| 경영 및 무역안전 요건 | 기본상황 | 설립년도, 영업유형, 주요 무역방식, 소유유형, 직접대의 투자기업 유무, 기업경영 장소(지사 또는 자회사) |
| | 재무상황 | 전년도 투자상황, 외상투자총액, 공상등록자금총액, 유동 비율, 자산 부채비율, 총자산보수율, 고정자산 순잔고액 |
| | 인원현황 | 직원 총수, 외국적 직원 수, 대표자 형사범죄 기록, 재무 책임자, 통관담당자 현황 등 |
| | 내부관리 현황 | 재무장부(재무관리규정), 창고 및 자재규정, 수출입 및 세관 업무 담당 전문부서, 수출입업무 처리 지침 또는 규정, 수출입업무자료 파일 구축, 기업 및 무역관련 문서 및 데이터 보존 등 |
| | 수출입 상황 | 수입 및 수출 상품 중 5위 이내 외국 공급자·수하인 명단 10대 수입 및 수출상품, 수출입관세 총액 등 |
| | 신용 상황 | 최근 3년간 형사처벌, 밀수행위 처벌 등 |
| | 안전표준 | 기본규정, 화물, 시설, 인원, 거래업체, 정보 |

출처: 김종훈, 「중국 AEO 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니스』 제21호 pp.65-94, 2012.4, pp.84~85.

86) 김종훈, 「중국 AEO 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니스』 제21호 pp.65-94, 2012.4, pp.84~85.

나) 공인혜택

- 중국은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리 등급이 다른 기업에 대해 차등적으로 관리 조치 함⁸⁷⁾
 - B류 기업은 중국 해관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고, 각종 수속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통상의 관리를 적용받음
 - A류 기업 중 내륙지역의 기업은 소재지신고(所在地申告) 및 항구검사허가(口岸檢查許可)⁸⁸⁾와 같은 별도의 혜택이 부여됨
 - 물품 검사의 경우 기업의 제품 생산 혹은 화물의 하역시기에 맞춰 세관 직원을 우선적으로 파견해서 검사함
 - 휴일을 포함한 시간 외 긴급통관을 우선시해줌
 - 가공무역은 은행보증금통장제도(銀行保證金通帳制度)⁸⁹⁾등의 조건을 완화하는 등 편의를 누릴 수 있음
 - AA류 기업의 경우, A류 기업의 혜택과 더불어 기업이 직면한 세관업무상 문제에 대해서 세관 직원의 협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수출입화물의 개장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한편 C와 D류 기업에는 엄격한 관리감독이 실시되고, 특히 D류 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공무역을 할 수 없음

- 중국의 기업분류관리제도에서 AEO에 해당하는 AA류 기업 인증에 따른 혜택은 <표 III-12>에서 보인 바와 같이 10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음⁹⁰⁾

87) 정형곤 외 2인(2010.8, pp.51~52)

88) 중국어로는 “屬地報關”와 “口岸驗放”라 하며, 수입자 혹은 통관대리인이 수입화물 도착 전에 기업이 소재한 내륙지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에서는 단순검사 후 통과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 간 빠른 통관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출처: 정형곤 외 2인(2010.8, pp.51~52)

89) A류 기업의 경우 세관기업분류관리방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담보를 허가하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기업에서 제출한 담보서류에 의거하여 검사통과시키며, 보증금을 면제함 - 출처: 정형곤 외 2인(2010.8, p.51~52)

90) WCO, “Compendium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2009 및 정형곤 외 2인(2010.8, p.51~52)

〈표 Ⅲ-12〉 중국 기업분류관리 AA류 인증의 혜택

| 혜택 구분 |
|---|
| ① 기업의 신뢰성 구축 |
| ② 기업의 세관문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직원 파견 |
| ③ 수출 및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율 감면 |
| ④ 소재지 신고 허용 |
| ⑤ 항구에서의 검사 및 통관 절차 이행 |
| ⑥ 사업장에서의 검사 및 통관절차 이행 |
| ⑦ 현장확인을 위한 특별전담팀 지정 |
| ⑧ 업무시간 외 혹은 휴일 중 시급한 통관처리사항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 |
| ⑨ 신고를 목적으로 한 기록 제출·조정·보고 등 무역절차 관련 처리에 특혜부여 |
| ⑩ 신고등록서류 처리의 특혜 |

출처: 정형곤 외 2인(2010.8, pp.51~52) 참조하여 저자작성

2) 중국 해관의 새로운 기업평가 기준(Interim Measures for Enterprise Credit Management, IMECM)⁹¹⁾

가) 공인대상 및 기준

- 중국해관은 2014년 12월, 이전의 평가 메커니즘을 대신해 해관총서령 제225호로 사업체 신용/위해 요소 관리를 위한 새로운 임시 대책을 도입하였음
 - 2008년부터 시행된 기업분류관리제도는 2011년 개정을 거쳐 2014년 후반까지 시행되어 왔음
 - 동 제도는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은 통관 상 혜택을 지원하는 반면 낮은 평가를 받은 기업은 혜택을 제한하였던 평가 시스템(AA, A, B, C, D)으로 진행되었으며 등급 분류시 회사의 무역실적 및 규모에 의존하였음
- 기업분류관리제도 도입 후 국제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해관은 WCO SAFE

91) 중국해관총서(GACC), "Legislations on Certified Enterprises/AEO(海矣总署令第225号(《中华人民共和国海矣企业信用管理暂行办法》)), 2015.1 및 트레이드 네비, 「중국 세관의 새로운 기업평가 기준」,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134&boardDataId=7103&CP0000000002_BO0000000076_Action=boardView&CP0000000002_BO0000000076_ViewName=board/BoardView, 2015.03.05., 검색일자: 2016.02.23.

Framework, 미국의 C-TPAT와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 기타 해외의 AEO 제도와 같은 국제 기준에 맞춰 조정하기로 함

- 중국 기업들은 신용상태에 따라 5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던 기업분류관리제도 대신 <표 Ⅲ-13>과 같이 네 범주로 분류될 예정임

□ 중국과 우리나라 AEO와 비교할 경우, 고급 및 일반 인증기업을 AEO 공인업체로 볼 수 있음

<표 Ⅲ-13> 중국의 새로운 기업평가기준 대상 구분

| 대상 | 평가 기준 |
|---|--|
| 고급 인증 기업 (Advanced Certified Enterpri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해관의 공고82에 따른 세관인증기준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증기업과 기본 골격은 동일 - 다만 인증 기준 항목이 더 많음(32개의 항목) |
| 일반 인증 기업 (General Certified Enterpri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해관의 공고82에 따른 세관인증기준을 적용 ○ 기본 카테고리(4가지 영역, 29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관리(internal controls(including IT systems)) - 입증된 재무 건전성(financial conditions) - 세관 요건 준수의 적절한 기록(compliance) - 적절한 보안 및 안전 기준(rade security) ○ 추가 보너스 항목(세관에 확인된 경우 점수 부여) |
| 일반 신용 기업 (General-credit enterpri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세관에 등록된 기업 ○ 인증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지만 신용 불량 기업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인증 기업 ○ 1년 동안 신용 불량 기업에 적용되는 관리를 받았고, 그 1년 동안 신용 불량 기업이 되는 위반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기업 |
| 신용 불량 기업 (Discredited enterpri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범죄나 필수 행위를 범한 경우 ○ 예정된 시간에 세금·지불해야 할 벌과금·몰수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이전 분기 해관 신고 오류율이 동기 전국 평균 오류율의 두 배보다 높은 경우 ○ 세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경우와/나 세관 신고 과정에서 혐의를 받으면서 세관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한 경우 ○ 불법 이득을 취하거나 사기 행위에 연루된 경우 ○ 세관에서 불량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타 경우 |

출처: 중국해관총서(GACC), "Legislations on Certified Enterprises/AEO: III, Bulletin No. 81 of GACC, 2014," 2015.1, p.22 및 트레이드네비, 「중국 세관의 새로운 기업평가기준」 참조하여 저자작성

- 2014년 12월 1일부로, 기존의 기업분류관리제도에 따라 등급별 나뉘던 기업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⁹²⁾
- AA류, A류 기업은 각각 고급인증기업, 일반 인증기업으로 변경됨
 - B류 기업은 일반 신용기업으로 변경됨
 - C류, D류 기업은 중국해관에 의해 재심사되며 변경 가능하지만, 만약 신용 불량 기업으로 심사결정 되는 경우에는 기존 기업분류관리제도의 C류, D류의 신용평가를 그대로 적용받게 됨
- 새롭게 제시된 중국의 AEO 인증을 위한 기업의 평가기준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EU 및 기타 국가에서 시행되는 AEO 제도와 유사함
- 내부 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s(including IT systems))
 - 입증된 재무 건전성(financial conditions or status)
 - 세관 요건 준수의 적절한 기록(compliance)
 - 적절한 보안 및 안전 기준(Trade security)

〈표 Ⅲ-14〉 중국의 새로운 기업평가기준(고급인증기업)

| 구분 | 평가 기준 | |
|-------------|------------|------------------------------|
| 1. 내부 통제시스템 | 시스템 통제 | 내부통제 구조 세관 활동에 대한 교육 |
| | 수출입 거래선 통제 | 서류 통제 서류 보관 수출입 활동 |
| | 내부감사 통제 | 내부 감사 시스템 관리책임 교정 메커니즘 |
| | IT 시스템 통제 | 정보 시스템 데이터 관리 정보 보안 |

92) 중국해관총서(GACC), “Legislations on Certified Enterprises(海关总署令第225号(《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暂行办法》)),” 2015.1, p.19.

〈표 Ⅲ-14〉의 계속

| 구분 | 평가 기준 | |
|---------------------|---------------------|--|
| 2. 입증된 재무 건전성 | - | 회계정보 재무 상환능력 수익성(이윤율) 세금지불능력 |
| 3. 세관 요건 준수의 적절한 기록 | 법, 규정의 준수 | 직원의 위반 기업의 위반 |
| | 수출입의 규칙성 | 등록된 정보 수출입 기록 신고서의 규칙성 (E-Data 송신) 납세 증명서 |
| | 세관 요구사항의 충족 | 요구사항 관리 |
| | 나쁘지 않은 외부 신용상태 | 외부 신용상태 |
| 4. 적절한 보안 및 안전 기준 | 물리적 보안의 통제 및 측정 | 물리적 보안 |
| | 물리적 허용의 통제 및 측정 | 물리적 허용 보안 |
| | 직원 보안 측정 | 직원 보안 |
| | 거래처를 위한 보안 통제 및 측정 | 거래처 보안 |
| | 화물 보안 통제 및 측정 | 화물 보안 |
| | 컨테이너 보안 통제 및 측정 | 컨테이너 보안 |
| | 운송수단을 위한 보안 통제 및 측정 | 운송수단의 보안 |
| 5. 보너스 항목 | 위기 관리 측정 | 위기 관리 |
| | 보너스 항목 | |

출처: 중국해관총서(GACC), “Legislations on Certified Enterprises(海关总署令225号(《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暂行办法》)),” 참고하여 저자 작성

- AEO 인증에 대한 평가에 대해 기업들은 기존 세관의 감사에만 의존했던 것과 다르게, 외부의 제3자 전문가를 고용하여 그들의 평가를 참고로 이용할 수 있게 됨
- 고급인증기업에 대한 AEO 인증절차는 보다 간소화되었는데 인증의 권한은 지역세관으로 위임되었고 처리기간은 90일 이전으로 단축되었음

- 또한 일반 신용 기업은 AEO 인증 등급의 순서와 상관없이 바로 고급 인증 기업으로 신청이 가능함
 - 기존 AEO 인증의 경우에는 B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이 AA 등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 등급을 거쳐야 했음
 - 다만 신용 불량 기업은 AEO 인증 신청 전 반드시 일반 신용 기업에 우선적으로 분류되어야 함

- AEO 인증 신청 전, 기업은 자체평가(self-assessment)를 통해 인증기준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함

나) 공인혜택

- AEO 인증기업에는 AEO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라 해당 국가의 세관에 의해 통관편익을 제공받는 등, <표 III-15>에 제시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표 III-15> 중국 AEO 인증기업의 혜택

| 혜택 | 고급 인증 기업 | 일반 인증 기업 |
|--|----------|----------|
| 수입 및 수출 물품에 대한 낮은 검사율 | ○ | ○ |
| 수입 및 수출 물품의 서류 심사 절차 간소화 | ○ | ○ |
| 수입 및 수출 물품의 통관 절차 우선 처리 | ○ | ○ |
| 중국해관이 명시한 그 밖의 행정적 편익 | ○ | ○ |
| 수입 및 수출 물품의 품목, 세관 평가, 원산지의 확인 전에 또는 다른 세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검증 및 반출 절차 처리 | ○ | |
| 세관이 기업을 위해 조정자 지정 | ○ | |
| 은행 보증금 계정 제도에 적용되지 않음 (가공 무역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 | ○ | |
| 통관 원활화를 위한 조치들이 AEO 상호 인정에 따라 국가나 지역에 있는 세관에 의해 제공 | ○ | |

출처: 중국해관총서(GACC), "Legislations on Certified Enterprises/AEO Article 16-17," 2015.1, pp.7~8.

- 신용 불량 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를 적용받게 됨⁹³⁾
 - 수출입 물품에 대한 높은 검사율
 - 수출입 물품의 서류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 가공 무역 및 기타 다른 절차에 대한 특별 감독
 - 중국해관에 의해 명시된 그 밖의 행정 원칙과 조치들

나. 중국 AEO 사후관리 현황

1) 자율 공시 제도(Voluntary Disclosure Program, VDP)⁹⁴⁾

- 2014년 7월 상하이 세관은 상하이 임시 FTA존(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PFTZ)에서 적용되는 자율공시제도(VDP)를 공표함
 - 기존에는 기업 자율규제(enterprises self-regulation; 企业自律)로 불렸음
 - 상하이 세관은 관할구역의 기업이 물품 수출입에 대해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자발적으로 세관에 부적합 정보를 보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동 지침을 공표하였음
- 상하이 임시 FTA 존에 등록된 창고 및 물류업체 등 모든 회사는 자율공시제도(VDP)에 참가할 수 있음⁹⁵⁾
- 자율공시제도(VDP)에 참가하는 회사는 다음과 관련한 모든 세관규정 위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함⁹⁶⁾
 -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의 수출입

93) 중국해관총서(GACC), "Legislations on Certified Enterprises(海关总署令第225号(《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暂行办法》))," 2015.1, p.8.

94) 상하이 FTZ 관할 세관의 공지 32호(上海海关关于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实施区内企业自律管理的公告(2014年 第32号)) 및 Deloitte Japan, "China Customs May Expand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Nationwide", *Tax Newsflash*, 2015.07.

95) Deloitte Japan,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Introduced in China(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Tax Newsflash*, 2014.9.

96) 상동

- 가공무역 및 가공무역과 관련된 결합물품등의 수출입
 - 관세 면제대상의 물품(가공무역목적으로 외국 투자자에게서 별도 조건이 없이 제공 받은 장비를 포함)
 - 세관선언, 보세물류 및 판매되는 무관세(duty-free) 물품
 -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모든 활동
 - 세관의 감사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세관규정의 미 준수내용으로서 감사를 통해 밝혀진 위반사항이 아닌 내용⁹⁷⁾
- 자율공시제도(VDP)를 이용하기 위해 기업이 따라야 할 순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⁹⁸⁾
- 내부준수사항 검토와 관련하여 모든 무역거래와 관련된 세관규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
 - 세관규정 위반사유 조사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시행
 - 상기 사례 증빙을 위한 서류화 작업 및 자체감사 보고서(self-audit report)를 통해 자발적으로 세관규정 위반사항을 보고
 - 세관은 자체감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기업이 자율공시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자율공시제도(VDP)를 통해 기업은 세관의 행정처벌로부터 다음과 같이 잠재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행정처분으로서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완화 또는 부과대상 제외
 - 관세 및 부가세 환급을 늦게 지급하였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의 감액 또는 면제
 - 향후 밀항단속국(Anti-Smuggling Bureau, ASB)의 검사에 따른 회사의 준수도 등급(customs compliance rating) 하락의 면제
 - 다음연도 세관 감사대상에서의 제외되며 기업은 규정 위반사항을 스스로 교정하고

97) Mondaq, "China: China Customs: Pilot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 <http://www.mondaq.com/x/345778/Export+controls+Trade+Investment+Sanctions/China+Customs+Pilot+Voluntary+Disclosure+Programme>, 검색일자: 2016.02.25.

98) 상동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제공되어짐

- 자율공시제도(VDP)는 수출입 무역업자들에게 세관 규정 위반사항, 이에 따른 세관의 조사, 잠재적 위험에 대한 평가 등을 스스로 확인하는 내부준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며 또한 이러한 상황을 문서화하도록 권고함⁹⁹⁾
 - 내부준수보고서의 작성은 기업이 세관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자체 감사 보고서(self-audit report)를 통해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옴

-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AEO 공인 기업 중 고급인증기업의 경우 자율공시제도(VDP)를 이용시 매 3년마다 이뤄지는 재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¹⁰⁰⁾

- 중국해관은 2014년 5월 베이징, 상하이, 심천 등 10군데 세관에서 임시적으로 도입했던 자율공시제도(VDP)를 2015년 5월, 12개 세관으로 확장함
 - 적용받는 지역 세관은 북경(Beifing), 대련(Dalian), 공북(Gongbei), 항주(Hangzhou), 난징(Nanjing), 난닝(Nanning), 칭다오(Qingdao), 상하이(Shanghai), 심천(Shenzhen), 천진(Tianjin), 무한(Wijam) 및 샤먼(Xiamen)임
 - 시행중인 12개 세관 이외의 세관들은 재량에 따라 동 제도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음

- 또한 기존 상하이 지역 등 특정구역에서 사용되던 자율공시제도(VDP) 기준을 일관된 내용으로 제정하여 전국 세관을 대상으로 2016년 중순경 발표될 예정임

99) IFCBA, "China customs self-compliance pilot likely to extend into 2015,"
<http://ifcba.org/node/829>, 검색일자: 2016.02.25

100) Deloitte Japan(2015.7)

2) 세관 관리(재심사)¹⁰¹⁾

- 중국해관은 등급별 AEO 공인기준 이행상태에 따라 인증 기업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근거법령은 2014년 12월 1일 개정된 해관총서령 제225호 제15조에 따름

- 해관은 고급 인증업체(advanced certified enterprises)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일반 인증업체(general certified enterprises)에 대해서는 비 정기적으로 공인 갱신심사를 할 수 있음
 - 공인 갱신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인된 기업은 일반적인 신용상태의 기업으로 전환되며 1년 동안 공인신청을 다시 진행할 수 없음
 - 공인 갱신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일반 공인심사기준에 해당되는 고급인증 기업은 일반 인증기업등급이 부여됨

- 공인 등급의 기업이 1년간 신용이 불량한 상태가 되거나 동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이 불량한 기업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해관은 동 기업을 일반 신용상태의 기업으로 조정함
 - 기업 등급이 조정된 신용 불량 기업은 1년 후 인증 기업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 중국 기업분류관리제도상 기업이 AEO 공인(AA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중국 해관이 정한 일자에 맞춰 제출하여야 함¹⁰²⁾
 - 비즈니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평가 보고서(Assessment Report on Business Operating and Management Status)를 매년 제출
 - 감사보고서(Audit Report)를 매년 제출
 - 수출입과 관련된 비즈니스 서류를 분기별 제출

101) 중국해관총서(GACC), "Legislations on Certified Enterprises(海关总署令第225号(《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暂行办法》))," 2015.1, p.7.

102) Shao Weijian, "China AEO Program, PPT," <http://chn.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4419&seqno=1020267>, 검색일자: 2016.02.23.

3) 기업협조책임인¹⁰³⁾

- 중국해관은 2008년 4월 1일 기업분류관리방법을 제정하여 AEO에 해당하는 AA류 기업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면서 기업협조책임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¹⁰⁴⁾
 - AA류 기업에 대한 통관편의 조치 외에 전문가(專人)를 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음¹⁰⁵⁾

- 중국해관이 운영하는 기업협조책임인은 공식적인 명칭을 가진 것은 아니며, 협조책임인을 전문가(專人)로 규정하고 있고, 일선세관에서는 대외적으로 협조원(協助員)이고, 대내적으로 연락원이라고 부르고 있음¹⁰⁶⁾
 - 세관의 기업협조원을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업체는 중국해관의 기업분류관리 방법상 AA기업에 한함
 - 또한 세관이 기업협조원을 지정하는 경우 별도 해당업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함

- 기업협조원의 소속은 직속세관의 기업관리처(企業管理處) 및 예속세관의 협조과(協助科)이며, 동 부서는 세관마다 업무분장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업분류 및 보관원의 등록과 같은 기업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¹⁰⁷⁾
 - 성남길 외 4인(2009.12)에 따르면, 기업협조원이 관리하여야 할 대상 기업 수가 많고 세관직원이 부족하여 AA류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전체 담당직원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함
 - 또한 2009년 기준 천진세관의 경우 72개 기업(이 중 한국기업 16개)을 AA기업으로

103) 성남길 외 4인(2019.12, pp.82~84)

104) 해관총서령 제170호의 기업분류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企業分類管理辦法)에 의거한 해관기업관리업무처리지침(海關企業管理業務辦理指南)제5장 제4절 중 《방법》앞으로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办法》將對企業的具体影响)에 따르면 “指派專人負責協調解決企業辦理海關事務的疑難問題”(“기업의 세관업무에 관하여 의문 나는 어려운 문제를 맡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을 지는 전담자를 파견한다.”)고 규정함 - 출처: 한국관세개발무역원(2009.12, p.82)

105) 성남길 외 4인(2009.12, p.82)

106) 성남길 외 4인(2009.12, pp.82~84)

107) 성남길 외 4인(2009.12, pp.82~84)

지정하여 세관의 기업협조원 10여명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음

- 기업협조원의 선정 과정은 예속세관에서 추천하여 직속세관에서 심사 후 승인하며, 자격 대상은 세관경력이 다양한 자로서 세관법규를 숙지하고 법규준수능력 등이 뛰어나야 하는 등 구체적인 협조원의 선발지침은 각 세관별로 상이함
- 기업협조원의 역할은 기업의 애로사항 확인, 법령 제개정시 통보 및 기업분류관리방법에 따른 기업의 위험분석이 있음
 - 관할세관의 협조원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애로사항 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법령 등의 제·개정시 기업 우편함 또는 전화를 통해 변경내용을 즉시 전달함
 - 또한 협조원이 관리하는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관할세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알선하여 애로사항 해결에 협조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한편, 기업분류관리방법에 따라 기업의 수출입 및 회계 운영 등 각종 상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위험을 분석하여 기업 등급의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 언론에 따르면 중국해관의 기업협조원제도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착하지 않아 직속 세관별로 운영방식이 다소 상이하다고 함¹⁰⁸⁾
 - 치밍(齊溟) 중국해관총서 처장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천진, 상해 등 전국의 열개 도시에서 기업협조원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함
 - 중국 전국에 약 70만개의 업체가 있어서 모든 업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적용 대상은 고급인증업체와 지방정부가 지정한 업체라고 함
- 성남길 외 4인(2009.12, p.84)에 따르면 ‘기업분류관리제도는 기업을 동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매년 기업별로 분류등급을 심사하여 우수기업을 AA 기업으로 상향조

108) 「한·중 세관 합동 기업 설명회 베이징서 개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250>, 검색일자: 2016.02.23.

정하고 혜택을 부여하게 되므로 기업협조원과 지정업체는 향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4. 일본

가. 일본의 AEO 공인제도

- 일본의 AEO 공인은 수입자, 수출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공인관세사, 제조업자 등 6개 부문의 물류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이 없이 공인 또는 비공인 제도로 운영함
- 일본에서 AEO 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표 Ⅲ-15>에서 제시된 것처럼 ① 법규준수도, ② 전자통관시스템(Nippon Air Cargo Clearing System, 'NACCS')의 운영, ③ 재정건전성(Capability to conduct related operations properly) 및 ④ 법규준수규칙(法令遵守規則, Compliance Program, 'CP')을 수립할 것 등의 4가지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함¹⁰⁹⁾

<표 Ⅲ-16> 일본의 AEO 공인기준과 주요 내용

| 분야 | 주요 내용 |
|-------------|---|
| 법규준수도 | 3년 동안 관세법, 무역관계법 등 무역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전자통관시스템의 운영 |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하여 통관절차,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업무를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
| 재정건전성 | 안전하게 화물을 관리하고 통관절차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통관업무 가능성 등을 평가함 |
| 법규준수규칙 | 수출입총괄관리부서, 거래업체 관리, 화물보안, 통관적법성 문서화, 세관협력 등 통관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함 |

출처: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index.htm#05>)인용하여 저자 작성

109)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수출입통관 특례제도,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 검색일자: 2016.2.13.

- (법규준수도) 법규준수도 공인기준은 3년 동안 관세법, 무역관계법 등 통관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체납, 관계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의 고용사실 여부,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무역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임
 - 관세법, 국세범칙단속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 집행 후 2년 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과거 3년 이내에 관세,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이력이 있는 자 등을 AEO 공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전자통관시스템) 전자통관시스템(NACCS)을 사용하여 수출입법규에 따라 통관절차,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함

-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요건은 재무건전성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화물을 관리할 수 있는지, 통관절차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의 통관업무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임
 - 재정건전성 요건은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재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음
 - 회계 장부 및 재무 서류의 작성·보관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책임자가 명확하여야 하며, 체납의 경우 세관에 연락하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지 등이 포함됨

- (법규준수규칙) 수출입업무에 관한 법규준수규칙(CP)은 관세법에 규정¹¹⁰⁾된 바에 따라 통관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문서화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보안기준(security standards)이 주된 판단기준이 됨
 - 수출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명칭, 책임자의 이름, 직위
 - 수입신고 및 특례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명칭, 책임자의 성명, 직위
 - 담보 제공 및 관세, 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납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 부서의 명칭, 책임자의 성명, 직위
 - 특례 신고화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명칭, 책임자의 성명, 직위

110) 수입자의 경우 「관세법」 제7조의5(승인요건)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법규준수규칙의 기재사항), 수출자의 경우 「관세법」 제67조의 4(승인요건)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법규준수규칙의 기재사항)

- 법규 준수 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명칭, 책임자의 성명, 직위
- 수출입업무 및 법규준수 감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 신청자의 사업 등에 관하여 임원 등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의 명칭 및 목적에 관한 사항
- 수입 신고 등 담보 및 납세 관리 또는 특례 신고화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러한 업무의 운영에 대한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세관과의 연락 체제 및 법령에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방안
- 장부 서류의 작성,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신청자의 재무 상황에 관한 사항
- 신청자의 임원, 종업원 등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

〈표 Ⅲ-17〉 일본 법규준수규칙(CP) 요건

| 구분 | 내용 |
|--|--|
| 1. 조직(Organizational Set-up) | 법규준수규칙을 이행하는 담당부서의 인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총괄관리부서를 각 사업부서별로 설립 |
| 2. 거래업체관리 (Contracting Parties(Business Partners) Requirements) | 거래업체에 대해 화물보안 및 원활한 사업운영능력 등을 포함한 법규준수규칙 이행 능력의 적격성 |
| 3. 화물보안 (Cargo/Conveyance/Premises/ Personnel Security) | 화물 추적시스템 및 운송로와 운송수단의 점검체계 수립, 화물보안을 위한 시건장치, 감시카메라, 경비시스템, 출입자관리 등 보안시스템 수립 |
| 4. 통관절차 적법성 문서화 (Due Customs Procedures) | 화물관리리스트 작성(물품명세, 원산지 표기, 품목분류, 관세율, 적용되는 무역관계법령) 및 주기적인 정보 갱신 |
| 5. 세관협력 (Consultation/Cooperation/ Communication with Customs) | 세관에 대해 법규준수규칙 운영에 관한 위험보고체계 구축 |
| 6. 위험관리(Crisis Management) | 비상시 보고체계와 즉각, 예방적인 조치를 항시 준비 |
| 7. 교육훈련(Education/Training) |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수립 |
| 8. 내부감사(Internal Audit) | 법규준수규칙의 내부감사체계 수립 |

출처: 일본 관세국 · 일본 재무성, “AEO program,”
<http://www.customs.go.jp/english/aeo/pamphlet.pdf>, p.12, 검색일자: 2016. 2. 17.

- 특히, 일본 세관에서는 관세법 기본 통달 제0418호 「특례 수입자의 승인 요건 등의 심사 요령(特例輸入者の承認要件等の審査要領について)」에 의거하여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에서 승인받은 수출자로서 법규준수규칙을 갖춘 경우 이를 공인심사 시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하고 있음¹¹¹⁾
 - 제4조 준수규칙 등에 관한 내부통제 심사기준으로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법규 준수규칙을 정하고 있는 경우, AEO 공인기준과 관련된 부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준수규칙 전부를 AEO 법규준수규칙으로 취급할 수 있음
 -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의 규정에 따른 경제산업성의 수출 등의 허가를 포괄적으로 받은 수출자가 신고한 ‘무역 관리에 관한 수출 통제 사내 규정’
 - 항공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항공화물 이용 운송 사업자 등에 관한 보안인증 운송업체 프로그램(Known Shipper)에 따른 ‘항공화물 보안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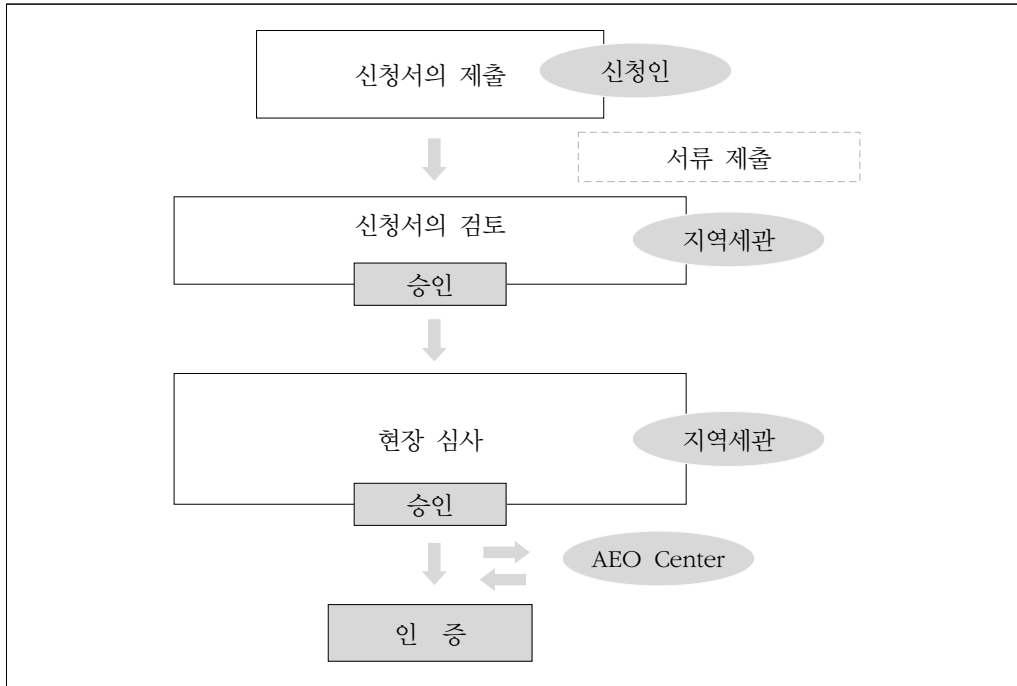
- AEO 공인을 받고자 하는 AEO 공인 신청서(서식 C-9000), 법규준수규칙, 자가심사서(Self-check sheet) 및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 세관에 신청함¹¹²⁾
 - 일본 관세국에 따르면 AEO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관에 미리 관련 정보를 신청하고 세관공무원의 상담을 받는 등 세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세관에서는 접수된 공인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서면심사한 후, 특히 화물보안관리에 관한 항목들을 현장에서 심사하여 AEO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AEO 공인을 승인함
 - 세관이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화물보관장소, 시건장치, 컴퓨터 시스템, 조명장치 등을 심사함

111)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관세법 기본 통달 제0418호 「특례 수입자의 승인 요건 등의 심사요령(特例輸入者の承認要件等の審査要領について)」, <http://www.customs.go.jp/kaisei/zeikantsutatsu/kobetsu/TU-H19z0418.pdf>, 검색일자: 2016. 2. 20.

112)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izen.htm>, 검색일자: 2016.2.20.

[그림 Ⅲ-5] 일본 AEO 인증 절차



출처: 정재호 외 2인, 『주요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2014, p.54.

-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각 공인 부문별로 납세신고 전 화물 인수, 적재지 수출허가, 보세구역 허가수수료 면제, 건별 보세운송 승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 받음
 - 특례수입신고자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여 납세신고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허가를 받게 됨으로써 수입화물의 신속 통관 및 비용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정수출신고자는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화물이 놓여있는 장소 또는 화물의 적재지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화물의 신속한 선적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2015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EU 등 7개의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체결되었으며, 중국, 홍콩, 스위스 등

의 국가들과 협상 중임

- 2015년 기준으로 542개의 업체가 공인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기업들에는 AEO 요건 가운데 법규준수규칙(CP)을 갖추는 것이 가장 어려운 업무인 것으로 나타남¹¹³⁾
 - 일본 관세당국에서는 AEO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제도가 확대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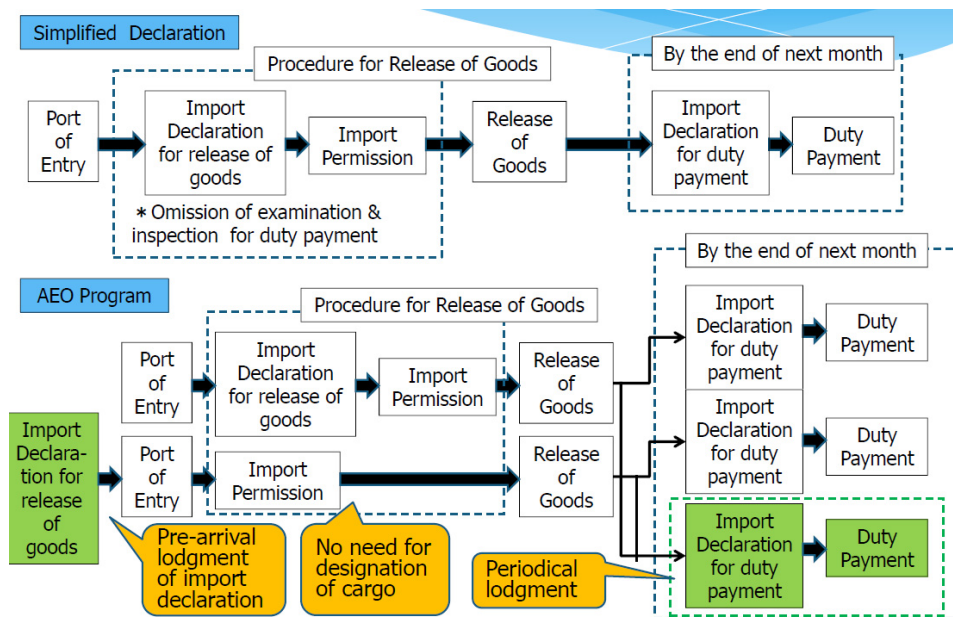
나. 일본의 AEO 운영 현황 및 동향

- 일본은 2001년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하고 제3장(Acceleration of Customs Procedure)을 수용하여 수입신고와 납세심사를 분리하고, 일정한 법규준수 요건을 갖추어 세관에 공인된 수출입업자(authorized operator)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입신고를 간소화하는 시스템(Simplified Declaration System)을 도입하여 운영해왔음
 - 이는 해당 업자가 지정(HS코드 9단위)한 특정화물에 대해서는 물품을 반출한 후에 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통관절차보다 신속한 통관혜택을 제공하였음
 - 수입신고단계에서는 관세액 결정에 관한 심사가 생략됨
- 일본에서는 국제 물류의 보안 확보 및 원활화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WCO SAFE Framework 체제를 채택하고 2006년 3월 수출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AEO 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후 2007년 4월 수입자, 2007년 10월 창고업자, 2008년 4월 관세사와 운송업자, 2009년 7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07년 AEO 제도 시행 이후에는 AEO 공인업체들에게 기존의 시스템보다 확대된 신고서류 간소화, 물품장치장에서의 신고수리, 물품검사 완화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통관의 신속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113) Koichi Iwasaki, "Japan AEO," Thomson Reuters, 2015. 8. 28, <https://tax.thomsonreuters.com/blog/onesource/japan-aeo-program-authorized-economic-operator/>, 검색일자: 2016. 2. 15.

- 일본의 AEO 공인업체들은 기존의 공인업자(Authorized Operators)에게 적용되는 약식신고(Simplified Declaration System)가 적용되던 것보다 혜택이 확대되어, 약식신고대상 화물지정의무를 면제하고 물품이 선적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됨¹¹⁴⁾

[그림 Ⅲ-6] 일본 AEO 제도의 발전



출처: 일본 관세국, ADB-WCO National Workshop on RKC Implementation, <http://sasec.asia/uploads/events/2014/RKC%20Workshop%20Bhutan/japanese-experience-implementing-rkc-requirement.pdf>, 2014. 6. 검색일자: 2016. 2. 21.

- 일본 관세국과 재무성에서 ① AEO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② 업체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업무를 주관함
 - 각 물류업자별 공인요건, 공인혜택 등 관련 규정은 관세법과 통칙에 규정하고 있음¹¹⁵⁾

114) Japan customs, “Japanese experience on implementing RKC requirement on Special Procedures for Authorized Persons and AEO”, <http://sasec.asia/uploads/events/2014/RKC%20Workshop%20Bhutan/japanese-experience-implementing-rkc-requirement.pdf>, 2014. 6, 검색일자: 2016. 2. 13.

115)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관세법, <http://law.e-gov.go.jp/htmldata/S29/S29HO061.html>.

– 관세법 제7조의 2(특례수입신고제도), 관세법 제67조의 3(특례수출신고제도), 통칙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함

- 일본은 2017년까지 AEO 공인기업들에 신고지 세관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입신고관서 자유화(輸出入申告官署の自由化)’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AEO 공인기업들에 화물처리비용의 절감, 통관절차 정비 및 범규준수도 제고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¹¹⁶⁾
 - 화물이 물리적으로 소재한 장소의 통관지 세관에서만 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여러 세관에 통관업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항구별로 통관절차를 관리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일본의 2016년 관세법 개정 또한 수출입기업들로 하여금 수입통관절차에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범규준수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¹¹⁷⁾

- 따라서 일본 관세행정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범규준수도가 높은 기업에 수출입 기업에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보다 확대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기업들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같은 맥락으로 일본 관세당국은 수출입자가 조직 내에서 통관관련 내부통제시스템(compliance system)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AEO 공인 또는 FTA 자율인증 등 공인 기준의 주요 요소로 삼고 있음
 - 최근 AEO 수입자 및 AEO 통관 업체를 대상으로 가공 재수입 감세 제도를 이용하여 수입 신고 감면 절차를 간소화, 가격 미정화물의 가격 변경 절차를 일부 생략하

검색일자 2016. 1. 19.

116) Ernst & Young Tax Co, “Impact of 2016 Japan tax reform on Customs Law,” http://www.eytax.jp/pdf/newsletter/2016/Japan_tax_alert_29_January_2016_e.pdf, 검색일자: 2016. 2. 22.

117) Ernst & Young Tax Co, “Impact of 2016 Japan tax reform on Customs Law,” http://www.eytax.jp/pdf/newsletter/2016/Japan_tax_alert_29_January_2016_e.pdf, 검색일자: 2016. 2. 22.

는 등 수출화물 선박(항공기)의 출항 예정일 이후 수출 허가 후 내용 변경 수속을 승인 세관 AEO 부문에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9개 지역세관의 AEO 전문가가 공인신청 및 재공인심사를 담당하며, 도쿄 세관에 AEO 센터를 두어 AEO 프로그램의 일관적인 이행을 관리하고 있음¹¹⁸⁾
 - 하코다테,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모지, 나가사키, 오키나와 지구 등 총 9개 지역세관에서 AEO 공인을 수행함

다. 일본의 AEO 사후관리 현황

1) AEO 공인기업의 자율관리¹¹⁹⁾

- AEO 공인기업은 공인 후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자체평가(self-audit)를 실시하여야 함¹²⁰⁾
- 자체평가결과를 보고하는 때에는 법규준수규칙(CP)에 따라 업무평가를 실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법규준수규칙(CP)에는 내부통제조직, 거래업체 관리, 화물보안, 통관절차, 세관협력, 위험관리, 교육, 내부감사 등의 7개 요건을 포함하여야 함
- 일본 관세국에서는 AEO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 또는 법규준수규칙(CP)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법규준수규칙(CP)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법규준수규칙(Model CP)을 제시하고 있는데¹²¹⁾, 상기의 법규준수규칙(CP)요소를 포함하여 실

118) 일본관세국, 'AEO 인증승인에 관한 연락처',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list.htm>

119)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AEO 심사요령 등,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index.htm#05>, 검색일자: 2016. 2. 13.

120) Japan Customs & Tariff Bureau · Japan Ministry of Finance, "AEO program,"
<http://www.customs.go.jp/english/aeo/pamphlet.pdf>, 검색일자: 2016. 2. 17, p.15.

121) 일본 관세국, AEO 사업자가 되려면,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index.htm>,
검색일자: 2016. 2. 13.

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내 법규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

- 표준 법규준수규칙에 따르면 제1장 총칙(목적 및 적용 범위), 제2장 기본 방침, 제3장 (최고 책임자), 제4장 기본 업무, 제5장 다른 법령의 준수 규칙, 제6장 관련 회사 등의 지도 등, 제7장 주무관청 연락 체제, 제8장 보고 및 위기 관리, 제9장 장부 서류 등의 보존, 제10장 교육 및 연수, 제11장 처분, 제12장 기타 총 12개의 장으로 규정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¹²²⁾
- 내부통제조직은 무역 관련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각 법규준수규칙(CP) 단위를 관리하는 총괄관리부서와 각 사업부서들의 준법 감시를 위한 법령감사부서를 기본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함
 - 총괄관리부서는 독립적인 상설부서가 권고되나, 이미 총괄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부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별도로 총괄관리부서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총괄 관리 부서로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부문 등과 업무를 분담 할 수 있음
 - 법령감사부서는 총괄 관리 부서 및 사업 부서 등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입장에서 확인이 요구되고 감사의 연속성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상설 부서를 둘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무역 관련 업무의 적법성 심사를 실시하는 ‘법령 심사’와 무역 관련 업무 등에 관한 법령 준수 규칙 등 관련 규정의 운용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¹²³⁾
- 거래업체관리는 법규준수규칙(CP) 이행과 관련하여 물류보안 측면과 사업운영능력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화물보안과 관련해서는 화물추적을 포함하여 운

122)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

123)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AEO 제도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faq/index02.htm>, 검색일자: 2016. 2. 11.

송로, 운송수단의 체계를 적절히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적절한 화물 관리를 위해 물품 명세, 품목분류, 관세율, 적용되는 무역법령, 원산지 표기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수출입목록을 작성하고, 업무의 정확성 유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한 업무지침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법규준수규칙(CP) 이행과 관련한 오류나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세관에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비상상황이나 즉각적인 대처와 예방책 마련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내부감사는 무역 관련 업무 등이 법규준수규칙 및 각 업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하여 부정 등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내부서의 법령감사부서에 의해 이루어짐¹²⁴⁾
 - 기존의 감사부에 의한 내부감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세법을 비롯해 무역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상기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우선 감사 부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감사 부서의 AEO 제도에 관한 지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일본세관 홈페이지에는 무역 당사자별로 법규준수규칙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내부 감사체크리스트(内部監査におけるチェックリスト) 작성 사례를 게시하고 있는데, 감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예시하고 있음

124)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AEO 제도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faq/q2-7.htm>, 검색일자: 2016. 2. 11.

〈표 Ⅲ-18〉 일본 내부 감사 체크리스트(수입자수출자용) 예시

| 구분 | 내용 |
|-----------------------------|---|
| 1. 준수 체제 운영 등 | ① 회사 조직, 경영 내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변경이 있는가. ② 법령 준수 체제의 현황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세관에 보고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③ 사업 부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처에 대해 법령 준수에 필요한 지휘·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④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회사명 및 소재지의 변경 이외에 상기 ①에서 ③까지 대해서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관에 연락하고 있는가? |
| 2. 통관절차의 이행 상황 및 화물 관리 상황 등 | ① 세관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업무가 준수 규칙 또는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② 적절한 화물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시설의 보전 조치, 필요한 업무 등이 준수 규칙 또는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
| 3. 감사부서의 자체 평가 | ① 내부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② 감사의 방법은 적절한가. ③ 해당 감사 결과를 필요한 부서 등에 적정하게 보고 있는가? ④ 감사는 개선해야 한다는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문에서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 4. 거래업체 관리 | ① 통관 절차 또는 화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회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그 업무가 관련 회사 등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② 통관 절차 또는 화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당사에 의한 위탁처 기업의 지도·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③ 관련 회사 등에 특정 수출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소비세의 면세 조치의 적용을 받는 운송에 관하여 당해 자회사 등이 만드는 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도·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 5. 세관 기타 관공서에 대한 연락체제 | ① 세관 및 관계 부처의 연락 담당자의 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화물의 이상 통관 절차 또는 다른 법령 절차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세관 및 관계 관공서에 연락되는 체제 단계는 유지되고 있는가? |

〈표 Ⅲ-18〉의 계속

| 구분 | 내 용 |
|-------------|--|
| 6. 내부 연락 체제 | ① 각 부서의 책임자 등의 연락 체제는 준수 규칙 또는 지침 등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② 부서 간 연락 체제는 준수 규칙 또는 지침 등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③ 화물의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규정 준수 규칙 또는 지침 등에 따라 그 상황을 정확하게 관계 부서 등에 보고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④ 상기 ③의 사고 등에 대해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등을 적절히 강구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
| 7. 재무 상황 | ① 재무 상태는 건전한가? ② 재무 감사에 있어서는 감사 법인의 감사의 실시 등 감사 체제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③ 납세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의 정보 전달 연락 창구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
| 8. 교육 및 징벌 | ① 직원의 연수·교육 규정 준수 규칙 등에 따라 연수·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는가? ② 실시되는 연수 등의 항목은 세관 수속 및 화물 관리 등의 적정화 관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 ③ 직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유효하게 기능 할 수 있는 체제가 유지되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출처: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index.htm#05>, 검색일자: 2016. 1. 21.

- 마지막으로 무역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자사의 준수 체제, 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 보안에 관한 사항, 세관 절차에 관한 사항 등 AEO 제도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절차서, 교육·연수 계획, 교육·연수 자료, 교육·훈련 실시기록 등 교육·훈련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AEO 제도의 자율관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인당사자별로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업무적합성 체크시트’, ‘표준 법규준수규칙(Model CP)’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역세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2) 공인기관의 AEO 심사제도

- 일본에서는 AEO 공인기업에 대해 별도로 사후심사 또는 사후조사를 면제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AEO 공인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인기준 준수 여부와 통관적법성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받을 수 있음¹²⁵⁾
- 세관에서는 공인기업이 제출한 자가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통관절차가 당해 기업의 법규준수규칙(CP)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방문 심사(on-site inspections) 계획을 수립함¹²⁶⁾
 - 화물관리 장소의 보안 수준, 화물 주변의 보안 시설 등 또한 심사대상에 포함됨
- 심사팀이 심사를 통해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Administrative Order for Improvement) 명령을 통지하며, 해당 기업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공인이 취소됨¹²⁷⁾
-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자가심사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 후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받아야 함¹²⁸⁾
 - 이후 3년마다 별도의 감사를 받아 인증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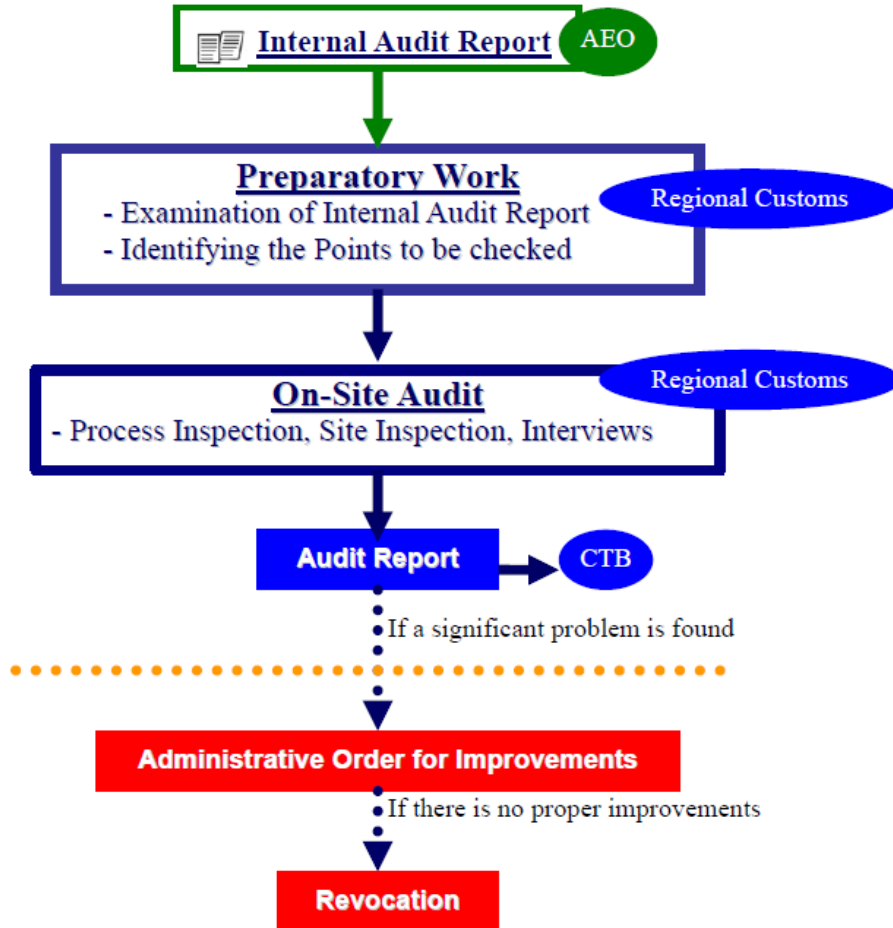
125)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about_mof/councils/trade_facilitation/proceedings/outline/ka220319.htm, 검색일자: 2016. 2. 17.

126) 일본 관세국·일본 재무성, 'AEO program', <http://www.customs.go.jp/english/aeo/pamphlet.pdf>, 검색일자: 2016. 2. 17. p.15.

127) 일본 관세국·일본 재무성, 'AEO program', <http://www.customs.go.jp/english/aeo/pamphlet.pdf>, 검색일자: 2016. 2. 17. p.15.

128) 일본 관세국·일본 재무성, 'AEO Program', <http://www.customs.go.jp/english/aeo/pamphlet.pdf>, pp.10~15, 검색일자: 2016. 2. 19.

[그림 Ⅲ-7] 일본 AEO 사후관리 절차



출처: 일본 관세국 · 일본 재무성, 'AEO Program',
<http://www.customs.go.jp/english/aeo/pamphlet.pdf>, pp.10~15, 검색일자: 2016. 2. 19.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기업의 자율관리

1) 정기자체평가

-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적어도 연 1회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공인기업 스스로 평가하고 공인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매년 AEO 공인기준과 관련하여 기업의 변동사항, AEO 제도 관리현황과 자체평가 점수 등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세관에 보고함
 - 미국에서는 최소한의 공인기준 준수 여부, 변동사항보고 및 거래처 위험평가를 C-TPAT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하고, 법규준수도와 통관적법성의 준수 여부는 수입자자율심사제도(ISA)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보고함
 - 일본에서는 매년 수출입관리현황을 포함하여 공인기준 가운데 법규준수규칙(CP) 이행 여부를 적어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평가(self-audit)하여야 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기자체평가는 공인심사 시와 상이한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기적인 자체평가의 대상이 화물관리와 내부통제를 포함한 기업의 위험관리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가이드라인 기준별 변동사항, 가이드라인 기준별 관리현황, 자체평가 점수 등 공인기준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함
 - 미국의 C-TPAT 기업은 화물관리와 관련하여 매년 공인기준인 '최소보안 기준'에 근거하여 자사의 공급망에 대한 '안전 위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물류보안 규정과

절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정기 안전항목보고’를 하여야 함

– 통관적법성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율심사(ISA)를 통한 위험평가를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수행하여 기업의 통관관련 업무 현황을 분석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일본에서는 내부통제조직, 거래업체 관리, 화물보안, 통관절차, 세관협력, 위험관리, 교육, 내부감사 등의 7개 요건을 포함한 법규준수규칙(CP)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하여야 함

□ 특히 일본은 공인기준 준수 여부의 평가 기준을 업무절차를 기반으로 구성된 법규준수 규칙의 이행 여부로 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정기자체평가는 공인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법규준수규칙의 평가항목이 업무절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범위는 통관뿐만 아니라 수출입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일본에서는 공인 후 심사와 자체평가 모두 법규준수규칙을 기준으로 자율관리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업무절차를 위주로 하여 법규준수규칙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체크리스트’, ‘업무적합성 체크시트’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기업에 관리 도구를 제공함

○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자체평가서’와 가이드라인 기준별 변동사항, 가이드라인 기준별 관리현황, ‘AEO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체평가 점수 등을 기록한 ‘자체점검표’와 근거자료(가이드라인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

□ AEO 제도에서 내부통제란 관세행정 관련 업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환경구축, 위험의 평가, 대응체계의 마련, 상호 의사소통 체계의 수립 등 일련의 통제 프로세스로서, 자율적 위험관리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음¹²⁹⁾

129) 김재일,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p.76,

- AEO 공인업체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세관련 위험을 스스로 식별·해결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구조적 오류를 예방할 수 있어 위험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¹³⁰⁾
-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과 미국 수입자자율심사제도(ISA)의 내부통제시스템 공인요건의 평가기준은 서로 유사하게 경영방침, 위험관리, 정보공유, 문서화 및 주기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의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인 ‘법규준수규칙(CP)’은 우리나라의 화물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을 통합하고, 관세법령뿐만 아니라 수출입물류 업무절차에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을 식별하여 그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
- 일본 AEO 제도의 법규준수규칙(CP)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자율준수체제¹³¹⁾’의 ‘자율수출관리규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수출통제관리상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수출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대표자의 수출관리 이행 선언,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수출심사 절차, 출하관리 또는 기술이전관리, 감사, 교육, 문서관리,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 정보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관세무역개발원,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2009, p.258.

130) 김재일,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p.76, 관세무역개발원,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2009, p.258.

131)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0조에 따라 기업 등이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추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자율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함

〈표 IV-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내부통제시스템 공인요건 비교

| 구분 | 우리나라 내부통제시스템 | 미국 내부통제시스템(ISA) | 일본 법규준수규칙(CP) |
|--------------|---|--|----------------------------------|
| 경영방침 | 경영방침 및 이행목표 조직과 인력확보, 교육 청렴성 | (통제환경) 청렴성 및 적격성 관리 조직 및 책임의 부여 인사 및 감독 | 조직, 부서별 총괄관리부서 설립, 교육훈련 |
| 위험관리 | 위험 식별, 평가, 관리대책 마련 관리대책의 주기적 평가 및 개선 | (위험평가) 목표수립 위험 식별, 분석, 관리 | 위험관리 |
| 문서화 | 절차 문서화, 이력 관리체계 마련 물품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자료의 관리절차 및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 | (통제활동) 세관 관련 법규준수 활동을 관리하는 정책, 절차, 기법 등 | 통관절차적법성 문서화 |
| 정보 공유 | 업무에 관한 정보 공유, 거래업체와 정기적 협의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정보축적, 인력 배치 | 세관협력 |
| 주기적 평가 |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주기적 평가절차 및 개선절차 마련 | (모니터링)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내부감사 | 내부감사 |
| 화물안전 및 보안 | - | - | 거래업체관리 화물보안 |

출처: 저자 작성

나. 공인 재(갱신)심사의 유형

1) 공인 재심사에 통관적법성의 포함 여부

-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AEO 공인 후 갱신 심사 시 화물 안전관리기준과 통관적법성을 함께 심사함으로써 세관의 기업 관리기능을 추가한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는 5년에 1번씩 AEO 종합심사로서 공인기준인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화물 안전관리기준 및 AEO기업에 따라 8대 통관적법성(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식재산권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을 추가로 심사함

- 미국은 4년에 1번 이상, 우리나라의 화물 안전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C-TPAT 의 공인기준을 재심사함
 - 중국은 3년에 1번씩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범위의 AEO 공인기준인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법규준수, 화물 안전관리기준을 재심사함
 - 일본은 법령에 따른 별도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나, 자가심사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EO 인증 후 2년 이내 AEO 공인기준을 심사할 수 있음
- 주요국의 경우 기업이 통관오류를 자율관리하거나, 세관이 관세조사를 통해 기업을 관리하는 등 기업 관리기능의 하나인 통관적법성 심사를 AEO제도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은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를 통해 매년 기업의 세관 법규준수도, 통관적법성 및 내부통제시스템 자율관리보고서를 검토하고 무역위험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을 배치하여 위험을 낮추도록 지원함
 - 중국은 수입자자율공시제도(VDP)를 통해 기업의 물품 수출입에 대한 자체검열, 세관 규정 위반사항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평가 시행 후 자체감사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업의 통관적법성을 관리함. 다만 수입자 자율공시제도(VDP)는 AEO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음
 - 일본은 AEO와 연계된 심사는 없으며 세관의 관세조사를 통해 통관적법성을 확인함

〈표 IV-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AEO심사와 통관적법성 심사

| 구분 | 우리나라 | 미국 | 중국 | 일본 |
|-------------|----------|----------------|----------------------|--------------|
| AEO 유효기간 | 5년 | 4년 | 3년 | 2년 |
| AEO 기준 심사방법 | AEO 종합심사 | C-TPAT 공인 재심사 | MCME 공인 재심사 | AEO 이행여부 재심사 |
| 통관적법성 심사방법 | AEO | 수입자자율심사제도(ISA) | 수입자자율공시제도(VDP)및 관세조사 | 관세조사 |
| 통관적법성 심사주기 | 5년에 1번 | 매년 | - | - |

출처: 저자 작성

- 우리나라의 AEO 공인 갱신 심사인 종합심사는 화물안전관리와 통관적법성을 모두 심사함으로써 행정비용을 감축할 수 있고, 정해진 행정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반면 미국은 화물안전관리기준인 C-TPAT 과 통관적법성을 자율적 관리하는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로 이원화함에 따라 기업은 전 세계 모든 물류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무역 위험을 동태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미국 세관(CBP)은 매년 화물안전관리기준과 통관적법성을 각각 C-TPAT과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에 의해 심사하므로 공인기간 동안 기업이 무역법령을 미준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액의 세액추징의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특이하게도, 일본은 AEO 공인기준의 하나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서 최초 AEO 공인 시 기업의 물류시스템 전체에 대한 자율관리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세관의 기업 관리를 대신함
 - 이는 미국과 중국이 AEO제도와 별도의 자율 심사 제도를 두는 것과 유사하게, 일본은 AEO공인 기준에 통관적법성에 대한 기업의 자율심사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의 기업은 AEO 공인을 위한 심사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AEO 획득에 있어 어

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엄격한 공인기준을 통과한 공인 기업에 대한 믿음에 기반해 세관은 공인 등급의 유효기간 및 공인을 갱신하기 위한 심사 제도를 별도 두지 않은 것으로 추측됨

2) 공인 재심사의 대상 선정 방법

- 우리나라는 AEO 공인기업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공인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 심사를 신청하여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다시 심사받는 종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종합심사의 전신은 갱신 심사였으며, 2011년 AEO 고시 개정에서 공인 갱신방법을 종합심사로 일원화하고 선정제에서 신청제로 변경하였음
 - 갱신심사 절차가 갱신심사, 종합심사로 이원 관리되어 용어의 혼동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므로 종합심사로 통합하였음
- 그러나 주요국은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가 아닌, 세관에서 AEO 재심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조사됨
 - 미국과 중국은 기업의 AEO 공인 유효기간 안에 세관에서 공인 갱신을 위한 재심사 기업을 선정함
 - 일본에서는 세관에서 실시하는 법규준수도 또는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IV-3〉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AEO 사후심사(갱신심사)

| 구분 | 우리나라 | 미국 | 중국 | 일본 |
|-----------|--------------------|-----------------------|-----------------------|------------|
| AEO 근거법령 | 관세법 | U.S Safe Port Act | 중국 해관총서령 제225호 | AEO 가이드라인 |
| 사후심사 목적 | 종합심사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 공인기준 재심사(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 공인기준 재심사(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 공인기준 미충족 시 |
| 심사대상 선정방법 | 공인기업의 신청 | 세관에서 선정 | 세관에서 선정 | 세관에서 선정 |

출처: 저자 작성

다.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모두 기업상담전문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중국은 AEO 공인기업에 대해 세관에서 기업상담전문관을 자동적으로 배치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 단, 중국은 기업상담전문관제도 운영을 위해 세관과 기업 간 상호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상기 주요국들과 다르게 AEO 공인기업을 위한 기업상담전문관전담제가 아닌 세관에 기업상담전문관을 배치하여 기업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우리나라의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공인기준 유지를 위한 정보제공, 정기자체평가보고서의 검토 및 종합심사관련 정보를 세관 심사팀에 전달하는 등 기업과 기관과의 소통역할을 대신함
 - 근거법령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 21조임
 - 기업상담전문관 수는 2009년 7명을 시작으로 2014년 16명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기준 AEO 공인기업의 수는 624개로 추정되므로 기업상담전문관 1인당 전담하는 기업수는 약 40개임
 - 세관은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세액 오류 예상 정보를 AEO 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 하는 등 기업상담전문관제도는 기업의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

- 미국의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자의 무역위험관리를 위한 정보지원, 대관 업무 및 통관 업무처리 등 지원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임
 - 근거법령은 1993년 제정된 세관현대화법(The Mod Act)에 의함
 - 국가기업상담관(NAM) 수는 2009년 기준 약 40명이고 관리대상업체 1,000개 중 약 550개를 관리하므로 국가기업상담관(NAM) 1인당 전담하는 기업수는 약 14개임
 - 기업상담전문관의 역할은 수입자자율심사제도(ISA) 가입기업 중 무역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

는 것임

- 기업상담전문관은 관세심사와 별개인 것으로 즉, 기업에서 집중 심사(Focused Assessment)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함
 - 기업상담전문관이 지정된 기업이 집중심사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 제공을 위한 심사 구성원으로 참여할 뿐,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님
- 또한 기업은 의약, 자동차 등 산업별로 지정된 CEE 국가운영기관을 통해 통관절차 및 세액정산과 같은 세관 업무를 관리 받을 수 있음

□ 중국의 기업상담전문관은 AA등급의 기업 관리를 위한 지역 세관에 소속된 협조원의 역할이 큼

- 중국의 기업상담전문관은 기업 협조원 또는 연락원으로 불리는 만큼 AA등급의 기업의 세관업무 애로 사항을 해결하도록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등 기업관리, 각종법령 제·개정시 전달, 기업의 무역위험 분석 및 분류된 등급의 재평가의 업무를 수행함
- 일부 지역세관에서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운영방식이 일관성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음

〈표 IV-4〉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운영 현황

| 구분 | 우리나라 | 미국 | 중국 |
|-------|----------------------------|--|-------------------------|
| 대상 기업 | 법규준수도가 높은 기업 (AEO공인 기업) | 법규준수도가 낮은 기업 (ISA가입기업 중 고위험으로 분류 가능한 기업) | 법규준수도가 높은 기업 (AEO공인 기업) |
| 역할 | AEO 공인기준을 유지하도록 지원 | 무역위험 제거를 위한 정보제공 | 법률 개정 및 AEO등급 재평가 내용 전달 |
| 인력 범위 | 1인 약 40여개 업체 ¹⁾ | 1인 약 14여개 업체 ²⁾ | - |
| 배치 방식 | 자동 전담 배치 | 자동 전담 배치 | MOU 체결 |

주: 1) 2014년 기준

2) 2009년 기준

출처: 저자 작성

2. 시사점

가. 정기자체평가의 개선

1) 정기자체평가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기준 보완

- 우리나라는 매년 정기자체평가 시 최초 공인기준의 준수에 관한 변동사항, 자체평가 점수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자체평가가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행 정기자체평가로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법규준수 및 수출입 안전관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개선을 실시하는 기업의 위험관리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자체평가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정기자체평가의 평가대상이 공인기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로 제출하는 정기 자체평가서가 최초 공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보완한 것과 유사하게 됨
- 정기자체평가 시 공인기준이 아니라 업무단위별로 세분화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자체평가 시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를 통해 업무단위별 위험관리 체계를 파악해야한다고 사료됨
- 주요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기자체평가 시 공인기업들이 보고해야 하는 내용은 단순히 공인기준 준수 여부가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에 기반한 주기적인 위험평가 수행 여부임을 알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에 화물관리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에 화물관리 공인기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수출입통관 자체만이 아니라 물류시스템 전체를 심사하는 것을 세관통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내부통제시스템 공인요건은 거래업체관리, 화물의 물리적 보안 등을 포함하여 모든 수출입업무 업무 절차를 바탕으로 한 법규준수규칙(CP)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 스스로 AEO 공인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위험요소의 평가와 개선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일본세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법규준수규칙(Model CP)에 따르면, AEO 공인 기업들의 법규준수규칙(CP)은 조직, 거래업체관리, 화물보안, 통관절차 적법성 문서화, 세관협력, 위험관리, 교육훈련, 내부감사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따라서 기업의 사후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자체평가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율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이 업무단위별로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관리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업무단위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주기적인 평가는 효과적으로 기업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기업상담전문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를 통한 기업심사는 제한된 세관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범위한 거래건별 심사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기업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여 미래의 법규준수도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어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게 해 줌¹³²⁾

2) 중소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지원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경우 약 30여개에 이르는 AEO 공인기준을 평가받아야 하고,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AEO 위원회에 의한 공인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현실적 제약이 많아 AEO 공인을 기피하였음¹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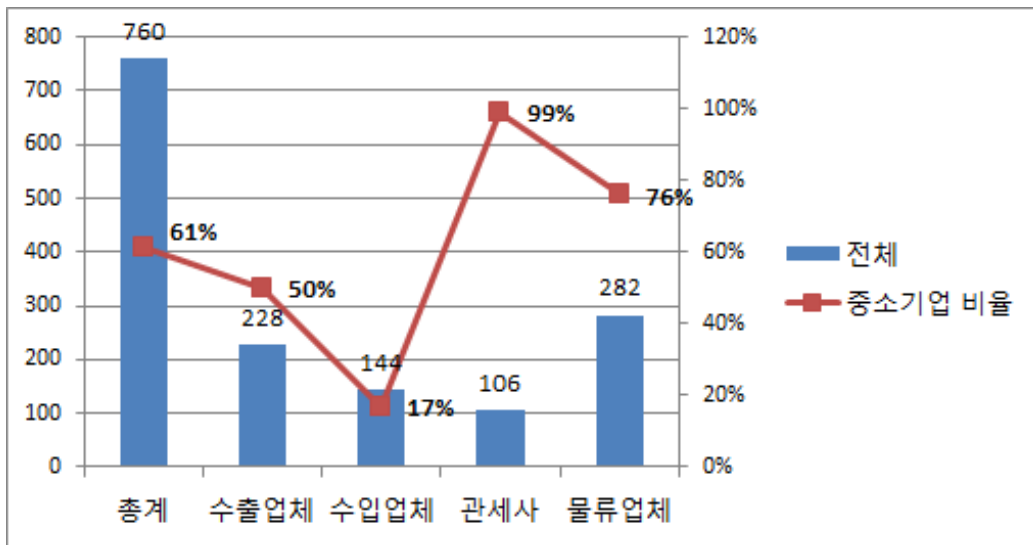
132) 송선욱, 「미국 관세심사의 기업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3호, 2009, p.39.

133) 도내 중소기업 AEO인증 획득 외면,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436>, 경기신문, 2014.01.23.

- 이러한 배경과 맞물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에 도움을 주고자 공인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였음
 - 2016년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AEO 부문별 공인 비율은 대기업 49%, 중소기업 61%, 으로 2010년부터 AEO 공인율이 증가하였음
 - 2009년부터 2015년까지 AEO 부문별 공인 개수는 각 연도별 21, 74, 104, 167, 167, 91, 104개이며 이 중 수출업체의 공인 개수는 각 5, 27, 31, 31, 33, 27, 57임
 - 이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관세청에서 수출 진흥목적으로 중소기업에 금전적 지원 및 공인기준 중 일부항목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기 때문으로 조사됨¹³⁴⁾

[그림 IV-1] 우리나라 AEO 공인 부문별 중소기업 공인율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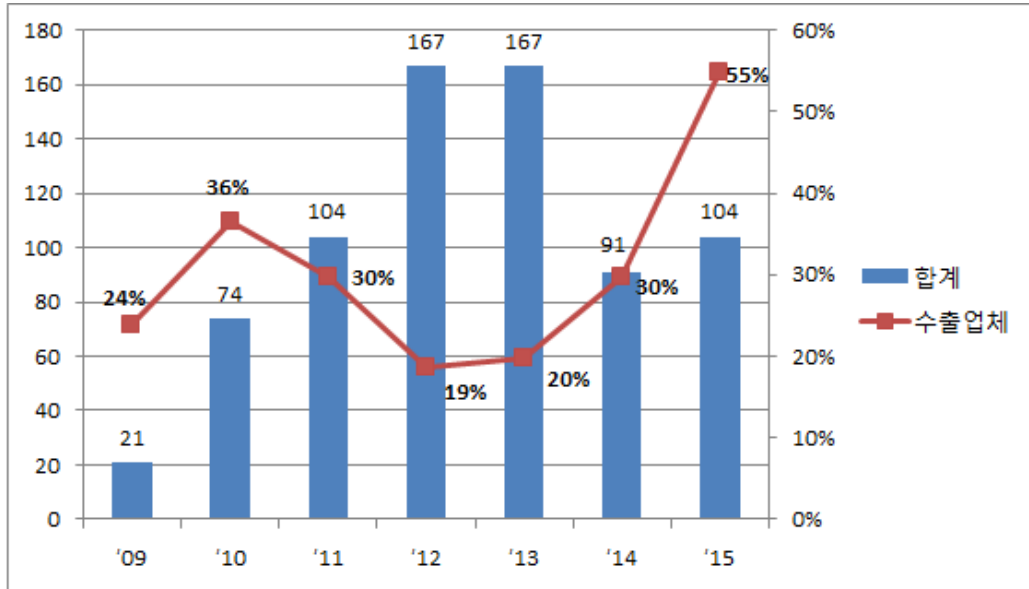


출처: 관세청 내부자료 인용하여 저자 작성

134)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정부예산 11억원으로 65개 업체를 지원하였음.
출처: 관세청, 『관세연감』, 2015, p.131.

[그림 IV-2] 우리나라 연도별 AEO 공인율(수출부문)

(단위: 개/%)



출처: 관세청 내부자료 인용하여 저자 작성

- 정기자체평가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AEO 공인기준의 자율관리가 중요한데, 이 중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적 관리가 궁극적으로 물류 보안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통관적 법성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
 - 내부통제시스템이란 공인업체가 관세관련 위험을 스스로 식별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구조적 오류를 예방함으로써 위험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수출입통관 자체만이 아니라 물류시스템 전체를 심사하는 것을 세관통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고 이들의 시장인 미국, 일본의 경우 물류선진국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동 시스템의 구축이 잘 이뤄져 있음

- 일본의 경우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AEO공인 기준에 내부통제시스템을 심사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물류시스템 관리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화물안전에 대한 위험과 무역 법령위반에 대한 위험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AEO 제도를 관리하고 더불어 통관적법성 관리까지 스스로 하려면 공인기준 중 내부통제시스템의 보유가 필요함
 -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유한 대기업의 경우 능동적인 자율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종합심사 대치가 가능함

나. 기업상담전문관의 배양

- 현재 우리나라 기업상담전문관의 행정인력은 2009년 7명을 시작으로 2014년 16명으로 증가함
 - 우리나라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 기업별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4년 기준으로 1명의 기업상담전문관은 약 40개의 기업을 전담하여야 함
 - 2014년 기준 AEO 공인 기업은 624개임
- AEO의 상호인정약정(MRA) 체결확산 및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의 증가를 정책목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세환경에 따라, 기업상담전문관제도를 통해 기업의 무역위험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 매년 10,000여개의 C-TPAT 가입 기업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사례는 기업상담전문관의 역할이 크다고 사료됨
 - 미국의 경우 2009년 기준 1,000개의 관리 대상업체 중 국가기업상담관(NAM)이 550개의 기업을 관리함으로써 1명의 국가기업상담관(NAM)이 14개의 기업을 전담하였음
 -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의 기업상담전문관과 CEE의 역할은 그 범위가 방대하며 수출입자를 위한 법규준수도 및 통관적법성의 관리, 무역위험의 사전제고뿐만 아니라

세관 통관업무 처리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우리나라는 2015년 기업상담전문관 협력도라는 항목을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에 추가 함으로서 기업의 자율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였음
 - 2015년 통합법규준수도 평가항목 구성체계에 기업상담전문관 협력도라는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중요 내용은 기업상담전문관이 기업 관리시 기업의 협력도를 평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면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율관리를 도모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기업의 자율관리가 극대화된다면 기업상담전문관은 AEO공인기업의 통관적법성 관리 즉 무역법규위반사항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종합심사는 단지 AEO 공인기준의 충족여부만을 확인하는 단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기업상담전문관의 행정 인원 증가 및 전문적인 교육 등을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V. 결 론

-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AEO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여 활발한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AEO 제도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세행정 또한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어 현재는 사후관리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왔음
 - 우리나라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AEO 제도는 AEO 기업들에 대해 공인 이후 공인기준 준수여부와 함께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업관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종합심사제도, 그리고 정기자체평가제도를 운영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공인요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여러 국가에서 AEO 제도를 물류의 안전을 위한 위험관리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포괄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AEO 공인기업들이 관세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율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우리 기업들의 무역안전 확보와 무역원활화라는 AEO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나라의 AEO 제도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고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AEO 공인기업들이 관세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율관리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무역안전 확보와 무역원활화라는 AEO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하여 기업의 업무단위별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정기자체평가의 핵심요소로 삼으면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율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모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공인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물류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절차별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들도 AEO 공인기준의 자율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 시 내부통제시스템 요건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AEO 공인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민관을 연결하는 기업상담전문관의 배치를 증가시켜 AEO 공인기업의 통관적법성 관리 즉 무역법규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미국의 기업상담전문관제도처럼 양질의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향후 중장기적으로 인원을 증가시키고, 전문적인 교육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관세무역개발원,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2009.
- 관세청, 『알기쉬운 AEO 제도 가이드』, 2013.
- 관세청, 『AEO제도 및 국제동향』, 2014. 11.
- 경윤범 · 이일재, 「AEO의 상호인증(MRA)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4권 제3호, 2013. 8.
- 김재일,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 김진규 · 김현지,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9권, pp.167~188, 2011. 2.
- 김중훈, 「중국 AEO 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니스』, 제21호 pp.65~94, 2012. 4.
- 김창봉 · 한용탁, 「AEO 제도의 정부지원과 사후관리가 AEO 활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2호, 2015.
- 성남길 · 김영춘 · 조영태 · 안이한 · 신대철,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제도의 해외 사례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
- 송선욱, 「미국 관세심사의 기업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3호, 2009.
- 정재호 · 박지우 · 양지영, 『주요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정재호 · 마정화 · 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8.
- 정재호 · 김미영 · 류태현, 『무역 원활화를 위한 중국의 FTA 통관규정 연구』, 2012. 8.
- 정형곤 · 나승권 · 노유연,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8.

한상현 · 최준호, 『WCO표준(Standards)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보완조치 강화방안』, 한국관세학회, 2007. 12, p.83.

정재호 · 박지우 · 양지영, 『주요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관세청, 2009. 12.

한국재정학회, 『기업심사의 신뢰성에 미치는 요인분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0.12.

WCO,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Guidelines, Benefits to AEO,” 2015. 6.

_____, “Compendium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2015.

CBP, “C-TPAT Minimum Security Criteria and Guidelines,” 2006. 8. 29.

_____, “Foreign Manufacturer Security Criteria,” 2006. 8.

_____, “Supply Chain Annual Security Profile Review(Formerly Self Assessment)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0. 12. 13.

_____, “C-TPAT Glossary of Terms,” 2014. 12.

_____, “C-TPAT's Five Step Risk Assessment Process,” 2014. 8.

_____, “5 Step Risk Assessment Process, C-TPAT Training Seminar,” 2010. 3.

GACC, “Legislations on Certified Enterprises/AEO,” 2015. 1.

Deloitte Japan, “China Customs May Expand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Nationwide,” *Tax Newsflash*, 2015. 7.

_____,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Introduced in China(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Tax Newsflash*, 2014. 9.

한국 AEO진흥협회, 자체평가, <http://www.aeo.or.kr/mber/aeoMberSaView.do>, 검색일자: 2015. 2. 13.

_____, 사전진단시스템, <http://www.aeo.or.kr/smlpz/aeoBsnsGuidanceView.do>, 검색일자: 2015. 2. 13.

- 이나연, 「한·중 세관 합동 기업 설명회 베이징서 개최」, 『재외동포뉴스』, 2015. 6. 25,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250>, 검색일자:
 2016. 2. 10.
- 일본 관세국, 수출입통관 특례제도,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
 검색일자: 2016. 2. 13.
- _____, AEO 심사요령 등,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index.htm#05>,
 검색일자: 2016. 2. 13.
- CBP, ‘C-TPAT Validation Process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tpat_validation_fags_13.pdf, 검색일자: 2016. 2. 11.
- Japan customs, ‘Japanese experience on implementing RKC requirement on Special Procedures for Authorized Persons and AEO’, <http://sasec.asia/uploads/events/2014/RKC%20Workshop%20Bhutan/japanese-experience-implementing-rkc-requirement.pdf>, 2014. 6, 검색일자: 2016. 2. 13.
- Japan Customs & Tariff Bureau · Japan Ministry of Finance, ‘AEO program’,
<http://www.customs.go.jp/english/aeo/pamphlet.pdf>, 검색일자: 2016. 2. 17.
- Shao Weijian, “China AEO Program, PPT”, <http://chn.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4419&seqno=1020267>, 검색일자: 2016. 2. 23.
- KOTRA, 「전문가 기고 미국 세관의 자발적 프로그램 C-TPAT, 가입해야 하나」, 2013.12,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9301&ARTICLE_SE=20302, 검색일자: 2016. 2. 11.
- _____, 「美 관세청의 수입업체 사전인증 프로그램 C-TPAT」, 2013.06,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4252&ARTICLE_SE=20302, 검색일자: 2016.2.11.
- 트레이드 네비, 「중국 세관의 새로운 기업평가 기준」, <http://www.tradenavi.or.kr/Cms>

Web/viewPage.req?idx=PG0000001134&boardDataId=7103&CP0000000002_BO0000000076_Action=boardView&CP0000000002_BO0000000076_ViewName=board/BoardView, 2015. 3. 5., 검색일자: 2016. 2. 23.

Mondaq, "China: China Customs: Pilot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
<http://www.mondaq.com/x/345778/Export+controls+Trade+Investment+Sanctions/China+Customs+Pilot+Voluntary+Disclosure+Programme>, 검색일자: 2016. 2. 25.

IFCBA, "China customs self-compliance pilot likely to extend into 2015,"
<http://ifcba.org/node/829>, 검색일자: 2016. 2. 25.

한국 AEO 진흥협회(<http://www.aeo.or.kr>)

미국 관세청(<http://www.cbp.gov>)

중국 관세청(<http://www.customs.gov.cn>)

일본 관세청(<http://www.customs.go.jp>)

부 록

[부록-1] 일본의 표준 법규준수규칙(Model CP)

| 장 | 내용 |
|------------------------|---|
| 제1장 (목적 및 적용 범위) | 제1조 00사의 준수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은 ○○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무역 관련 업무(이하 “무역관련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다. 동 규칙은 수출입 절차, 화물 관리 기타 무역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
| 제2장 (기본 방침) | 제2조 무역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다음을 우리의 기본방침으로 한다. 1. 무역 관련 업무 수행시는 법령을 준수하고 불법 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내 체제의 정비를 도모한다. 3. 동 규칙 및 별도 책정하는 업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를 행한다. |
| 제3장 (최고 책임자) | 제3조 적정한 무역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대표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책임자로 한다. 제4조(사내 체제의 정비) 무역 관련 업무 수행시의 책임 체제를 밝히기 위해 각 부문의 업무 내용, 종업원의 권한 및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한다. 제5조(총괄 관리 부서) 책임자는 법령 준수의 관점에서 무역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 관리 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사업 부문) 각 사업 부문에서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체제를 정비한다. 제7조(사무 관리 부문) 사무 관리 부문에서는 정해진 업무 지침에 따라 수출입화물에 관한 각종 서류의 대 사 확인 장부 서류의 보존, 재고 및 운송 상황 관리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인수 담보 제공 특례 신고의 관리 및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여 적정한 담보 금액을 보장한다. 제8조(법령 감사 부문) 법령 감사 부서는 무역 관련 업무에 관한 법령준수를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업무 지침에 의거 한 정기 감사 실시 및 각 부문 자체 감사 지원 2) 개별 무역 관련 업무가 법령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심사 및 승인 3) 감사 결과 등에 근거 법령 준수에 관한 업무의 개선 조치 권고 4) 감사 결과 및 권고의 최고 책임자 및 총괄 관리 부서에 보고 제9조(각 부문 책임자) 각 부문의 무역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각 부서 책임자를 설치한다. 책임자는 무역 관련 법령, 본 규칙 및 업무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각 부문의 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운영 절차에 따라 적정한 지시를 한다. 제10조(직원의 책무) 종업원은 제2장에서 정하는 기본 방침이 기업 활동의 기본임 |

| 장 | 내용 |
|--------------------------------------|--|
| | <p>을 이해하고 본 규칙 및 운영 절차에 따라 무역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한다.</p> |
| <p>제4장 수출입 목록의 작성·관리</p> | <p>제11조 총괄관리 부서는 무역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특례 신고(또는 특정 수출 신고) 대상이 되는 수출입화물의 품명, 기호 및 번호 수출입시 관련 법령, HS 코드, 적용 세율, 수하인 등을 기재한 목록(이하 “화물 목록”이라한다)을 작성하여 각 사업 부서와 공유한다.</p> <p>1) 화물 목록은 필요에 따라 법령 감사 부서의 심사 및 개정한다. 또한 세관에서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전자 매체에 의하여 제출한다.</p> <p>제12조(수출입 통관 업무) 특례 신고화물(또는 특정 수출화물)의 수출입통관 시에는 당해 화물이 화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화물 목록에 기재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신고 등 절차를 실시한다.</p> <p>1) 관세사에게 통관 의뢰서, 사양 가입 서 기타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적정하게 제공 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한다.</p> <p>2) 수출입 신고에 따른 화물 세관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속하게 관계 서류의 제출, 검사에 대한 대응 등을 실시한다.</p> <p>제13조(화물 관리)화물의 출하 관리 부서는 특례 신고화물(또는 특정 수출화물)에 대한 사양 가입 서 등 각종 장표와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화물 목록의 확인을 실시한 후 운송을 담당하는 부서(또는 업무 위탁처)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정비한다.</p> <p>1) 사무 관리 부문의화물의 보관 시설의 망실 방지 등의 조치 반출입 관리 뿐만 아니라 이동중인화물의 운송 상황이 있어 외국 무역선(기)에 하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p> <p>2) 화물 보관 시설에서는 안전 관리를 위한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져 정해진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적절한 보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한다.</p> <p>3) 특례 신고화물(또는 특정 수출화물)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총괄 관리 부서에 보고하는 체제를 정비한다.</p> <p>제14조(담보 및 납세 관리) 사무 관리 부문은 특례 신고화물의 수입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관에서 증가한 담보 제공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대응 한다.</p> <p>1) 특례 신고 및 납세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필요에 따라 확인한다.</p> |
| <p>제5장 다른 법령의 준수 규칙</p> | <p>제15조 총괄 관리 부서는 다른 법령의 준수 규칙이 따로 정해져있는 경우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세관에 보고한다.</p> |
| <p>제6장 관련 회사 등의 지도 등</p> | <p>제16조 총괄 관리 부서는 각 부서가 외부 사업자에게 무역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선정에 있어서는 위탁 처의 신뢰성을 충분히 파악 하여 각 부서에 연락한다.</p> <p>1) 적정한 화물 관리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 처가 수행 할 업무의 내용, 책임의 범위 담당자 및 책임자를 명확하게 한다.</p> <p>2) 위탁하는 업무에 따라 준수규칙 및 운영 절차가 본 규칙 및 당사의 운영 절차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p> |

| 장 | 내용 |
|-----------------------|---|
| | 3) 총괄 관리 부서는 전 2항의 사항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위탁 처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실시한다 |
| 제7장 주무관청 연락 체제 | 제17조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관청에서 질문 조회에 대응하는 책임자를 미리 정한다. 또한 출입 조사 및 업무 개선 조치 요구 등에 대해서는 각 부문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적확하게 대응한다. |
| 제8장 보고 및 위기 관리 | 제18조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사고, 법령 위반 등 또는 재무 상황에 따라 세 등의 세금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이하 '사고 등'이라 한다)가 발생했을 때의 보고 및 연락 체제를 미리 정비 해둔다 . 1)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각 부문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각 부문의 책임자는 사고 등의 정도에 따라 총괄 관리 부서 및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총괄 관리 부서는 전항에 의해 보고받은 사고 등의 내용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 된 감사 결과를 주무관 청에 즉시 보고한다. 3) 최고 책임자 및 총괄 관리 부서는 사고 등이 발생한 원인 규명 등을 실시해, 그 원인에 따라 본 규칙 등의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제9장 장부 서류 등의 보존 | 제19조 관세법에 따라 배치 해 둔 및 저장에 요구되는 장부 서류를 작성 부서 및 보관을 할 부서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책임자를 정한다. 1) 저장된 장부 서류 및 그 수정 내역은 세관에서 조회가 있을 때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상태에 정리해 둔다. |
| 제10장 교육 및 연수 | 제20조 각 부문은 무역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침, 관계 법령집, 참고 자료 등을 정비하고, 종업원이 편리한 위치에 정리 및 보관 등 필요한 순간에 사용 가능해진다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1) 각 부서의 책임자는 직원들이 항상 높은 준수 의식을 유지하고 무역 관련 법령이 규칙 등에 규정 된 사항을 침투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 법령 감사 부서는 각 부서의 책임자 및 직원들의 전문 지식의 수준이 충분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 감사 등을 통해 검증을 실시한다. 3) 무역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처 및 직원에 대해서도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
| 제11장 처분 | 제21조 법령 및 본 규정을 위반 한 직원들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 책임자가 엄격하게 처분한다. |
| 제12장 규칙 등의 개정 | 제22조 본 규칙 및 업무 지침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후의 본 규칙 및 운영절차를 신속하게 소관 부처에 제출한다. |

출처: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AEO 사업자가 되려면',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index.htm>, 검색일자 2016. 2. 13.

관세연구 15-03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2015년 12월 23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강성훈·김미영·김다량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ISBN 978-89-8191-823-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